

제4차 세계여성회의 활동 보고와 전망

이상덕
한국여성 NGO위원회 총무

1. 배경

1885년 유엔이 창설되었고,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로 여성지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역할을 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는 45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4년 임기의 위원국이 되었다.

여성지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유엔총회에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하고 멕시코에서 제1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었으며, 1976년부터 1985년을 <유엔 여성 10년>으로 제정하고 세계에 선포하였다.

1980년 행동강령의 이행을 중간점검하기 위한 제2차 세계여성대회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5년이 된 1985년에는 제3차 세계여성대회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유엔여성 10년간의 활동을 종합평가하였으며, 3백72개항으로 구성된 <2천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번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여성발전미래전략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새로운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행동강령은 각 나라 정부가 향후 여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며, 그 이행여부를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NGO들이 참여가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유엔의 준비 사무국에서도 NGO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2. 제4차 세계여성대회 활동 소개

이번 제4차 대회는 정부, NGO 모두가 지역별 준비회의를 진행되었다. NGO차원에서는 1993년 7월 한국의 여성단체 대표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NGO회의>에 참여하였고, 1994년 3월 정식으로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한국여성NGO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1월 일본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 여성들을 주축으로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 여성NGO위원회에서는 96개 여성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1994년 6월 자카르타에서 2천년까지 아·태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각국이 수행해 나가야 할 일반원칙을 제시한 <자카르타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준비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3차례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를 거쳐 이번 행동강령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활동영역이 워낙 많고, 이념적인 편차도 심한 참가단체들의 요구와 의견을 무리없이 수렴, 조정해야 하는 것과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국제회의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본인 역시 소규모의 국제회의만을 경험했을 뿐이어서, 초기 준비단계에서는 유엔기구나 정책의 흐름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었다. 단지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시사점을 준비과정에서 반영했다.

첫째, 한국의 여성운동이 자기분야별 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세계회의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이슈간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세계 NGO들 사이에서는 여성과 개발문제, 특히 각국의 ODA정책이 여성발전에 미치는 폐해들에 대해서까지 분석하는 리포트들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들은 현장에서 비로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을 접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일본 여성환경운동가들의 리포트에서 여성적 관점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소 한국에서도 환경운동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나 여성단체에서 환경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막연하게 느꼈었는데, 베이징회의를 준비하면서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의 연계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도 여성운동 속에서 토론해 봄아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셋째, 일본 여성운동가들의 리포트에서 <대학에서 지성이 죽었다>는 문귀를 발견하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젊은 여성들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래의 운동리더쉽을 길러 내는데 훨씬 조직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베이징에서의 활동보다는 국내에서의 준비과정에 더 큰比重을 두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베이징회의가 한국의 사회전반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따라서 유엔행동강령 초안과 NGO포럼에서 논의될 주제 중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꼭 필요한 주제들을 설정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몇 차례의 워크샵을 거치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에는 유엔여성행동강령 초안, 유엔인구개발회의, 유엔환경개발회

의에서 채택된 유엔 문서들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모든 분과는 단체의 대표들이 상징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과운영에 대한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였고, 가능한한 젊은 리더쉽들도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분과를 끌어가는 주체들을 조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성단체를 제외한 타 사회단체의 대표나 여성활동가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주력하여, 단체차원에서 여성활동가들이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도록 권유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여성장애인분과가 구성되고, 환경단체의 여성활동가와 여성단체의 환경담당자들이 몇 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 환경분과가 구성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과의 구성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하며, 이후 큰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베이징 현장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이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었다. 특히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면서 국제, 국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신대문제, 성희롱문제, 핵반대 캠페인 등을 하였다. 특히 92년 유엔환경개발회 의사 풍물패를 앞세운 한국참가자들의 활동이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화공연팀을 참가시켰다. 물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또 하나는 미디어 전략이었다. 외신기자들에게 우리들의 활동과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영어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변인으로 정했고, 포럼기간 내내 프레스센터에 상주하였다. 그래서 한국기자들에게는 NGO조직위원회의 공식발표나 진행상황들을 신속히 전달하였고, 한국참가자들의 활동을 영어로 기사화하여 매일매일 배포하였다. 그 결과 NGO포럼 일일신문인 <포럼95>의 9월3일자 1면에 '위로가 아니라 배상'을'이라는 머릿기사로 우리들의 주장이 풍물이 어울어지는 가운데 김경란씨가 춤추는 사진과 함께 자세히 실렸고, 차이나데일리가 발간하는 <월드 위민>이라는 신문에도 큼지막하게 실렸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 역시도 기사화되었다.

3. 평가와 전망

첫째, 이번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참가, 특히 NGO포럼에서의 활동은 그 동안 국제사회와 거의 단절됐다시피한 한국의 여성운동을 세계여성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위원회의 국제심포지엄 개최(1천여 명이 참석함), 정부회의장에서의 로비활동등은 대단하였다. 이는 본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외에도 비엔나 세계인권위에서의 활동의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아·태 실무위원회의 동아시아 담당인 마쓰이 야요리씨는 "한국여성운동은 매우 활동적인데 그 동안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보니 부럽다. 그 동안 참가를 위한 한국여성NGO위원회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기뻐했다. 뉴욕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한국교포 역시 한국 소문이 조직위원회 실무자들 사이에서 자자하다면서 매우 기뻐했다.

둘째, 세계여성운동과의 연대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국내 여성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이제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 않느냐. 저개발국가의 여성빈곤과 인권, 환경파괴 문제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는 외국여성운동가의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다. 실제로 포럼기간 동안 외국 여성들의 활동은 다른 나라의 여성인권문제, 양심수들의 인권문제 뿐 만아니라 소수민족의 인권문제, 외국인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 열대림을 파괴하는 다국적 기업상품 불매운동, 후진국의 외채문제, 지속가능한 대안적 개발문제, 핵반대운동, 평화문제 등 실로 그 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일본여성들만 해도 일본내 소수민족인 아이누문제, 전쟁의 폐해가 극심하게 남아있는 캄보디아 어린이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결정, 아시아 전역에서 행해지는 국제 인신매매반대운동, 필리핀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바나나를 직수입하는 일본 생활협동조합운동,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나 일본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등등이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한국에서 실천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젊은 여성들을 주체적으로 키워내는 일이다. 이번 회의에 10대들이 와서 자신들끼리 패널토의도 하고, 여성문제에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하는 것을 보면서 입시교육에 찌든 한국의 어린 소녀들에게 남녀평등문화와 창의성과 진취성이 개발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유엔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시민, 여성운동 속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여건을 각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교류기금, 여성기금, 환경기금 등을 조성하여, 민간단체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금들이 조성되어 특히 젊은 인력들을 기르는데 투자되었으면 한다.

넷째, 관심영역의 확대문제이다. 앞으로의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빈곤, 인권, 사회통합, 환경관리 등 사회 여러분야의 문제를 여성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이

슈는 모두가 여성의 이슈가 된다. 마찬가지로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의 이슈는 여성운동만이 아닌 한국 사회운동의 이슈가 된다. 즉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단체에서도 여성인권문제를 주요 이슈로 채택해야 한다. 이번 유엔 행동강령 중 인권분야에서는 문화적 편견, 인종주의, 종교적 극단주의에 의한 모든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적노예, 포르노, 매매춘등을 철폐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NGO들은 각자 자기분야에만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들어 지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에도 여성관련 조항이 채택되었다. 한국에서도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참여했지만, 여성관련 부분은 어떠한 글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성단체 역시 환경문제니까 하고 관심이 없었다. 요즈음 한국정부가 96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Local Agenda 21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권고사항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체결정과정에 여성 NGO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가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많은 남성 사회운동가들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젖어 있다.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생존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사람들이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최근들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패소 이후, 성희롱대책시민연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운동가들의 가부장적인 단면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성정에서 한국사회운동가들의 가부장적인 단면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할 때마다 분노와 좌절에 시달리는지 한국의 운동가들이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느껴 함께 동참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운동 내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개선해 나갈 때 진정한 사회발전과 인권이 정착될 수 있다.

통일운동 관련한 미주 버클리대 학생운동

조병기

버클리대학 한국학위원회 7대회장(93-94), 정치학 4학년

1994년 제3차 버클리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열고 나서

제3차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마치고

지난 4월 22·23일, 이곳 버클리에서는 한인청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차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91년 말 유엔 공동가입,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가 이듬해부터 제기된 북의 핵사찰 문제로 반전되어 최근에는 전쟁을 운운하는 심각한 상태로까지 이른 현실을 우려해 ‘도대체 핵문제가 어떤 것이길래 남북의 통일논의를 전면 대체하여 버렸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되었다.

행사에는 리영희 한양대학교 교수, 제임스 팔레 워싱턴대학 한국학 교수, 같은 대학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는 한홍구씨가 강사로 참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포, 학생들은 핵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심포지엄을 평하였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기까지의 경위, 행사의 내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심포지엄의 의의를 간략하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행사를 주도해 온 한국학위원회와 한인청년문화원

버클리대학에는 1천3백여 명의 한인학생들이 있다. 이중 학부 학생들은 약 9백여 명으로, 이들 중 어릴 때 이민오거나 유학온 학생들이 모여 ‘한국학위원회’라는 학생단체를 꾸려나가고 있다.

한국학위원회, 속칭 CKS (Committee for Korean Studies)는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학내에 한국사 및 한인들의 미주이민사를 정식 강좌로

개설하는 일을 해 왔다. 또한, 자매단체라 할 수 있는 '한인청년문화원'과 함께 이번 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북한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주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오클랜드시에 있는 한인청년문화원은 동포청년학생들에게 풍물, 노래, 그림 등 우리의 문화를 가르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문화단체이다.

1차 심포지엄 통해 본격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여

한국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3월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한 연사들을 동시에 미국으로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부터였다.

"평화통일의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된 1차 심포지엄은 남과 북이 대결의 대상이 아닌,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라는 것을 동포사회에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북측에서 박영수, 김경남씨, 남측에서 박형규, 정현백, 리영희 선생님이 참석하였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드문 일이어서인지 동포사회와 본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으로 행사를 지켜보았다. 여러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처음 내딛는 어려운 걸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학생들은 미주 동포이기에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통일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2차 심포지엄도 성공적으로 끝내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제2차 심포지엄을 열기로 결정하고 시기는 93년 봄으로 잡았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부터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92년 가을, 버클리대 학내에서 학생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학위원회 분반공부에서 준비한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백여 한인 학생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성공적인 학생심포지엄에 용기를 얻은 우리들은 2차 심포지엄에 남북의 학생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고, 지난 심포지엄 초청연사들과 의논한 뒤, 양측에 학생·여성·종교·정부대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측에서는 조두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박형규 전 서울제일장로교회 목사, 양영식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1급 자문위원,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을 통보해 왔으나, 북측에서는 때마침 심각해진 핵사찰 문제 때문인지 김완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 허혁필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리형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윤병철 조국평화통일연구원 위원 등 정부대표만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한참 북의 핵개발 의혹과 NPT 탈퇴선언 등으로 남북·조미관계에 긴장이 고조된 터라, 당초 계획하였던 "한반도 냉전 종식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통일심포지엄은 자칫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전이 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었으므로 학생들은 공항에서 남북의 초청연사들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긴장해야 했다.

4월 16·17일 양일에 걸쳐 오클랜드시와 버클리시에서 개최된 2차 심포지엄은 1차 때보다 좀더 성숙된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또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남북의 대표들이 서로 동질감을 찾으려고 노력해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초청연사들은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정세변화가 한반도 내에서도 냉전의 종식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양측 정부대표들은 핵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버클리시의 로니 핸콕 시장은 1993년 4월 17일을 '코리아 통일의 날'로, 오클랜드시의 엘리후 해리스 시장은 같은 날을 '코리아 냉전 종식의 날'로 선포한 것과 조두현 학생회장이 심포지엄에 참가, 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허가를 받고 북측대표를 만난 것은 2차 심포지엄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라고 하겠다.

3차 심포지엄에서는 핵문제 다루기로

제3차 심포지엄의 개최는 당초 95년 봄으로 계획하였다. 그것은 1·2차 심포지엄이 격년제로 열렸고, 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여유때문에 매년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핵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통일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행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93년 가을, 본격적인 기금 마련 행사를 시작하여 공연준비와 제반서류 작성에 들어갔고, 12월 경 남측의 통일원과 북측의 조평통에 초청장을 보내 부총리급의 담당자를 연사로 초빙하고자 함을 알렸다.

통일논의가 민간·정부의 공동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인사만을 초빙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다수의 연사를 초빙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고, 실제적으로 핵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정부대표의 초청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남측에서는 부총리급은 아니지만 북측에서 보내는 대표를 감안해 참석자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북측에서는 조·미간의 심각한 외교상황 때문에 이번 심

포지엄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 이에따라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3차 심포지엄을 민간·학술 차원의 교육적 행사로 바꿔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근간 핵문제에 대해 많은 글을 기고하는 리영희 교수를 비롯, 미국내 한국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와 북측유엔대사관 등을 통해 핵협상을 관한 자료를 수집·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제3차 심포지엄 전야제

제3차 심포지엄은 94년 4월 22·23일 양일에 걸쳐 전야제인 통일문화의 밤과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다. 22일 저녁 버클리대 정문앞 광장에 모인 한인청년문화원 풍물페와 관중들의 평화행진으로 시작된 전야제는 법대 강당에서 심포지엄 준비위원회의 일례인 김 교수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노래공연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내고향 내조국'으로 시작되었는데, 풍물반주로 합창한 '통일의 나라로 가자'에 이르러서는 3백여 관중이 함께 어우러져 손뼉을 치며 노래해 공연장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곧이어 벌어진 풍물공연에서는 힘찬 북소리와 함께 12명의 사물팀이 우도 이리판굿을 신명나게 공연하며 "백두한라 삼천리에 통일북을 올려보세"를 외쳤다. 마지막 순서인 '배달리 동물마을'은 민족의 애달픈 분단현실을 토끼와 거북이 우화로 표현한 풍자극이었다. 행사 직후에는 풍물페의 대동놀이를 선두로 평화를 기원하는 가두 촛불행진을 가졌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의 구스타브 슬츠목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이날 모든 순서는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통역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미주에서 보기 힘든 수준높은 공연이었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3차 심포지엄, 알맹이 있는 행사로 남아

이튿날인 23일, 학내 인터내셔널 하우스 강당에서는 아침 10시 반부터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 본행사가 열렸다. 순서는 준비위원회 대표인 구스타브 슬츠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학생대표인 내가 학생선언문을 낭독하여 심포지엄의 목적이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임을 밝혔다.

연사들에게는 각각 20분간의 발제와 2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침 순서에서 발표한 한홍구씨는 한반도의 핵위협이 이미 6·25전쟁부터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핵문제의 전개과정을 북측정권의 성격을 분석하며 발표하였다. 한홍구씨는 눈

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항하는 북측외교의 전례는 미국측이 성공적인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화외교적 방법만을 추구해야 함을 말해준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워싱턴대 잭슨국제정치연구소의 제임스 팔레교수는 북이 NPT 탈퇴선언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뒤, 미국과 북한정부의 입장을 비교해가면서 핵협상을 분석하였다. 팔레교수는 북을 비이성적인 위험한 국가로 규정하고, 핵소유가 미국의 우방에 대한 핵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핵의 국제적 통제가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미국은 현 외교 정책의 수정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다음 순서는 심포지엄위원회의 스터디그룹이 뉴욕의 국제원자력기구 및 북측 유엔대사관,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준비한 보고문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나를 비롯한 6명의 멤버가 주축이 된 스터디그룹은 지난 94년 2월에 오간 북·미·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사찰 합의와 외교협상 내용 및 3월에 있은 핵사찰의 세부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잠정결과는 언론이 특필한 것처럼 북측이 일방적으로 핵사찰을 거부해 핵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말하기에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여러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스터디그룹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측이 왜 3월21일 제네바에서 갖기로 합의되었던 대화를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했는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다.

낮 순서는 리영희 교수의 발표로 시작되었는데, 이교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북미간의 협상, NPT와 핵사찰을 둘러싼 유엔과 북의 관계, 핵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북한과 내부문제로 해석하려는 남한과의 의견대립으로 이루어진 삼중 구도로 해석하고, 북의 핵 투명성 보장과 미국의 북한과의 국교수립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폐널토론에서는 버클리대 한국학센터 소장인 이홍영교수가 추가 참여한 가운데 관중과 열띤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낮 4시까지 계속된 행사 동안,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동포들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심포지엄이 핵문제를 통일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알맹이 있는 행사였다고 평했다.

더 열심히 뛰겠다며 울먹이는 후배들

91년, 선배들이 준비한 1차 심포지엄 때, 대학에갓 입학한 1학년이었던 나는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고, 마지막 학기인 올봄에 3차 심포지엄을 후배·동료들과 더불어 이끌어내는 입장에 서보았다.

처음 1학년때 “통일”이라는 말에 괜한 겁을 내고 학교공부에 부담될까 두려워 학생회 모임에 나가길 꺼렸던 생각이 난다. 아마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던 많은 친구들도 내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을 안고 참여하였을 것이다.

피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행사를 며칠 앞두고서야 밤새워 번역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지를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학교공부에도 당연히 며칠씩 구멍이 생겼다. 나는 명색이 회장이니까 그런대로 넘어간다지만, 이제갓 들어온 1학년 후배들이 선배들의 성화에 못이겨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스러운 생각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마음졸여 준비해왔던 3차 심포지엄이 끝나던 날, 모처럼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심포지엄을 준비한 모두가 한데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 서로 껴안으며 흐뭇해 하는 가운데, 몇 명이 너무 힘겨웠던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음을 터뜨렸다. 울먹거리며 하는 말이 공연을 하면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고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우리의 분단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며 다짐하는 모습에 흐뭇하고 고마웠다.

통일은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소원

우리들은 통일을 협상하고 논하는 정치가도 아니고, 민권을 유린하는 군정하에 살았던 투쟁가도 아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며 우리의 생활에 충실하면 되는 학생들일 뿐이다. 그런 우리가 통일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혹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눈쌀을 찌푸리기도 했다. 아마 통일이라는 과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것이기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나는 몇차례의 통일심포지엄에 참가하면서 느껴서 믿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민족의 장래를 사랑하는 우리가 꼭 해야할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가도 투쟁가도 아니지만 통일은 정치가와 투쟁가의 것만이 아닌 우리의 것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면 오라고 기다리기 보다는 이루어내야 하지 않을까? 분단의 벽은 휴전선 철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서 치를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노동문제 제 1 강 -총론

현안 노동자 문제의 내용

하 증 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노동자 정서의 변화

- 87년 7, 8월 대투쟁이 남긴 것
- 노동조합에 대한 실리적 인식
- 조직 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노동자

노동자 구성의 변화

-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조직 노동자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 노동의 고숙련이 요구되나 권리는 축소되고 있다.

문민 정부의 노동 정책

<행정 및 법리 해석>

- 무노동 부분임금
- 휴일의 시간외 근로 인정

- 변경퇴직금 제도의 적용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
- 인사, 경영권과 단체교섭 대상
- 군복무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정리 해고 요건의 완화

<노동 정책>

해고 노동자 복직

성과급 임금구조 정착
임시직, 촉탁직 활성화
고통 분담론
세계화, 국제화론
노조 전임자 축소
한 자리수 임금 인상을

<노동법 개정>

제3자 개입 금지철폐

행정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전임간부 임금 보조 금지
근무시간 노조 활동 불인정
휴일(생리, 월차휴가 포함) 축소
연장근로수당 가산비율 조정
근로자 파견법 제정

노동법

근로자 파견법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제3자 개입 금지 - ILO의 권고, 결의

정부의 주장대로 '외부불순세력' 또는 '좌경용공세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굳이 동 조항이 노동관계법 내에 규정될 필요는 없다.

산업재해

1987년의 노동자천명당 노동손실일수 : 노동쟁의-756일, 산업재해-4,570일

직업성 재해 및 과로사의 증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재해자	사망자
1994년	85,948명	2,678명
1993년	90,288명	2,210명
1992년	107,435명	2,429명
1991년	128,169명	2,299명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노동자의 부주의가 산업재해의 원인인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 강화
환경 제국주의와 열악한 작업환경
사업주의 안전 시설 투자 기피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자본의 대응 - 신경영전략

신경영전략은 기존의 경영합리화와는 다르다.
슬로건을 채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생산의 유연화, 다기능화
직제 개편 - 다단계화, 단일화
각종 시장 제도 신설
교육 증가
회사 지원 소모임 활성화
현장 조직력 강화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전담 대응 조직 구성
발빠른 대응운동 창출

대대적인 대조합원 홍보전
새로운 노동자 문화 창조
회사측 교육에 대한 대응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강도 강화 방지 장치 확보
경영 참가

노동문제 제 2 강 - 노동문제 상담 실무

부당한 해고의 법률적 구제

1. 노동문제의 법률적 구제 의의

최소한의 보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본래적 투쟁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는 있다.
청산주의를 경계하자

2. 해고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관계가 끝나는 것

강제 사직
자동 사직
수습사원 미채용

3. 부당 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27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7조의 2 <해고의 예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27조의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4. 부당한 해고의 법률적 구제 절차 및 방법

① 진정 - 지방노동사무소

처리기간 25일(30일), 연기

② 고소, 고발 - 지방노동사무소, 검찰청 항고, 재항고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근기법 제27조의 3) - 지방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10일 이내) 행정소송 - 고등법원 (15일 이내) 상고 - 대법원 (14일 이내)

④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조합법 제39, 40조) -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신청 행정소송 상고

⑤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⑥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와 '제3자'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 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한 것은 노조 설립 신고시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여 노조 조직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노동부 업무지침 1990. 2).

근로자가 해고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쟁의 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노사의 관계당사자에 의한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 3자라고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2. 5).

근로자가 해고되었다 해도 정문으로부터 노조 사무실에 이르는 통로와 조합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3. 7).

⑦ 해고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

⑧ 조합원지위인정확인청구 민사소송

5.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득실(得失)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두 개의 산을 넘는 것과 같다.

6.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의 몇 가지 고려 사항

당사자 설득 - 우리나라 재판 제도의 특징

증인 확보

법률적 요건과 심정적 동조

변호사 선임과 완벽한 입증

'결심'과 '선고'

임금인상분에 대한 청구 확장

내심의 의사 - 비진의 의사 표시 : 일괄 사표

금반언의 원칙 : 해고수당, 퇴직금

7.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 전소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쳐서 소의 이익이 없다

주위적 청구 - 복직시켜야 할 채무의 불이행에 기한 손해

예비적 청구 - 복직 거절이라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판단 - 동일한 법률 사실에 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재판 기간 중의 임금인상 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소위 '돈독'이 오른다는 것

1심 승소 -> 2심 패소 -> 3심 승소 -> 환송심에서 부대 항소 및 청구 확장, 피고 항소 취하 -> 1심 판결 확정 : 임금인상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8. 정리 해고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

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정리 해고와 징계 해고의 구분

9. 사례 연구

-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해고는 무효인가?
- 2) 해고 후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았고 즉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그 노동자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3)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 받게 된다. 해고 기간 동안에 다른 기업체에 취업하여 더 높은 임금을 지급 받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가?
- 4) 직원들 상호 간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 45명중 43위였다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될 수 있는가?
- 5) 일용으로 수개월 동안 근무해 온 근로자들이 상존하는 사업장에서 특정한 소수의 일용공들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인가?
- 6) 다른 회사로 전직할 목적으로 모집에 응시하고 그 회사의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부당한 해고인가?
- 7)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년 퇴직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8) 휴직 기간 3개월이 지나도 복직 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고된다는 취업 규칙은 유효한가?
- 9) 주기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인가?

산업재해, 직업병, 과로사 상담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 외에 보상의 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확대되어야만 자본가들은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된다는 측면에서 산재 보상은 중요하다.

노동자의 산재 보상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산재보상 활동에 있어서도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산재사고나 직업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만큼의 보상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은 사업주에게 강제되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이 법에 규정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한 보상은 그 내용이 참으로 보잘 것 없으나, 아직도 노동자들이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등 쳐 먹으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는 우선 이 최소한의 보상만이라도 철저히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숨은 뜻

이 법의 제 1조 [목적]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라고 그럴듯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이 법의 속셈은 따로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주가 일일히 그 보상에 신경을 쓰고 처리하느라 사업 운영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업주(자본가)가 처리하여야 할 번거로운 일들을 정부(권력)가 떠맡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동력의 손실로 인한 자본 축적의 압박을 정부가 개입하여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일을 처리할 때, 각종 산재보상 제도가 마치 노동자를 위하여 있지 않고 회사나 노동부를 위하여 실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종합보험에 드는 것과 똑 같은 이치로 사업주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못된 법이지만, 그 내용을 철저히 알아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이다.

-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보험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이라는 것의 의미.
- ☞ 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고 혜택은 근로자가 받는다?
-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 공상과 산재의 차이

어떠한 재해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 절 ‘업무상 재해의 기본 원칙’

(제32조 - 39조 및 별표 1)

업무상 사고(제32조)

1.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시설물의 결함, 관리상 하자 있을 것.
2. 사고와 사상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아닐 것.

업무상 질병(제33조)

아래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4조에 속하는 경우에는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1.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폭로된 경력 있을 것.
 2. 폭로 정도가 건강 장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인정될 것.
 3. 특이적인 임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의학적 요양 필요성이 인정될 것.
- ☞ 반증의 책임

작업시간중 사고(제34조)

작업,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시 사고

천재지변 등 돌발적인 사고 때의 구조행위, 긴급피난행위시 사고

- ☞ 노조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작업시간외 사고(제35조)

- 작업시간외의 작업, 생리적 필요행위, 필요적 부수행위시 사고
- 시설 결함,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자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행위, 노동자에게 관리 전속권 있는 시설 이용 중 재해는 제외)
-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시의 휴식, 사업장 내 출퇴근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시 사고
- ☞ 접대 행위의 업무 수행성

출장중 사고(제36조)

- 출장 업무 수행시 사고 중 순로 이탈, 사적·자해·범죄행위, 사업주 지시 위반 행위가 아닌 사고

출퇴근 도중 사업주 지시로 업무수행시 사고

외근 근로자의 업무 수행시 사고

행사중 사고(제37조)

노무관리,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시 사고

사업주의 적극적, 구체적 지시(유급처리등)에 의한 행사시 사고

행사 준비, 연습, 기획 중 사고

기타 사고(제38조)

업무와 관련한 제 3자의 폭력에 의한 사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가
 ② 필요적, 부수적 행위인가
 ③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와 경합되었는가
 ④ 순수한 사적 행위는 아닌가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제 39조, 시행규칙 별표 1)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만성적 피로 :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1주 전에 일반인 적용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때

☞ 원인불명 사망자의 과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2) 물리적 인자(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고열, 한냉 등)에 의한 질환

(3) 이상 기압으로 인한 질병

(4) 소음성 난청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근골격계 질병)

(6) 진동 장해

(7) 요통

업무수행중 부상 : 통상과 다른 동작으로 요부에 돌발적 영향

만성요통 : 요부에 과도한 부담 업무 3개월 이상 종사자,

중량물 취급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 주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단, 변형성 척추증, 요추분리증은 연령 고려)

요부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의 범위

20kg 이상의 중량물의 상용적 취급 작업

인간공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작업

장시간 허리를 펼 수 없는 동일 작업

허리에 지속적인 진동을 받는 작업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

(8) 화학물질 중독

(9) 염화비닐로 인한 중상

(10) 타르 중독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 중독

(12) 연,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 중독

(13)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중독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중독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중독

(16) 벤젠 중독

(17) 지방족, 방향족 유기용제 중독

(18) 트리클로르에틸린 중독

(19) 디이소시아네이트 중독

(20) 이황화탄소 중독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22)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한 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 '업무상의 질병'의 범위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열상 및 출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합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과 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이(귀)질환
13. 전신수·타이피스트·필경수 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14. 연·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강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 · 닉클 · 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기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유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2유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1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 · 가성알카리 · 염소 · 불소 ·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 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이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 화합물로 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 · 광물류 · 동유 · 칠 · 탈 · 시멘트 등으로 인한 신와직염 · 습진 기타 피부 질환
31. 매연 · 탈 · 핏치 · 아스팔트 · 광물유 ·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독성 ·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 치료 ·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육외노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 짐승의 털 ·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 단독 · 페스트 및 두창
37. 제1호 내지 제36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개정 75.4.28>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해도 똑 같았겠는가?
- ☞ 제한적 규정인가, 예시적 규정인가?

산재 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요양보상)

- 요양비, 보조구대, 개호비, 이송비, 통원비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비지정 의료기관 및 요양승인 이전에 지불된 치료비는 재해자가 근로복지단지사 및 지역본부에 청구(영수증 첨부)
- 전원
- 재요양

☞ 모든 보상은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주에게는 조력, 중명의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 보험미가입 사업장의 산재

2) 휴업급여(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70% (근기법 60%)
- 평균임금의 산정(상여금)
- 평균임금의 정정, 개정 신청
- 재가요양시에도 지급

☞ 최저보상기준 19,188원(94.8.19. 일액) : 장해·유족급여, 장의비

3) 장해급여(장해보상)

- 1급 1,474일분(근기법 1,340일분)부터 14급 55일분(50일분)까지
- 1 내지 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받되 처음 1,2,3,4년분 선급 선택 가능
(예 1급 연금 329일분 × 4년 = 1,316일분)
- 4 내지 7급은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 지급 가능(1,2년분 선급 선택 가능)

- 업종, 경력, 나이, 과실 등에 따른 차이 없음

* 조정 :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의 등급 조정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이면 3개 등급 인상

8	"	2	"	2	"
---	---	---	---	---	---

13	"	2	"	1	"
----	---	---	---	---	---

* 가중 : 이미 불구였던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같은 부위에 부상을 당해 원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현재의 장해등급액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액 공제한 금액 지급

4) 유족급여(유족보상)과 장의비(장사비)

- 유족급여 1,300일분(근기법 1,000일분), 장의비 120일분(장사비 90일분) (사실 혼 관계있는 배우자도 해당)
- 유족보상연금 : 수급권자 사망시(배우자일 경우 재혼하면 다음 수급권자에게 승계, 미성년자일 경우 18세 미만까지)

☞ 유족보상연금 산정

예) 최대치 $47/100 + 20/100(\text{수급권자 } 1\text{인당 } 5/100) \times 1\text{년치 평균임금}$

5) 상병보상연금

- 치료 개시 2년 후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와 대체 지급
- 연금액은 장해보상연금 1-3급과 동일

6)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 사용자가 고의, 과실 인정해야
- 1급에서 3급까지만 해당
- 라이프니츠식 계산

7)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산재보상에 관한 이의 제기 절차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 '무과실책임주의', '개연성', '입증 책임', '반증의 책임'
"업무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고 추단하지 못할바 없으므로"

정보화 사회 노동자의 성격

하 종 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 이 글은 '다시 생각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졌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강의안 중의 하나입니다. 대중 강연의 교안인 만큼 그 내용이 전문적이지 못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사 학위 노동자의 출현

외국 유수 대학의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직원들의 얼굴이 슬로우 컷으로 차례차례 등장하는 어느 가전제품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보았다.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자랑이거나, 그러한 우수한 두뇌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 회사에서 펼치기로 했다면 꽤 팬찮은 회사일 거라는 느낌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광고일 것이다.

그 광고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 박사 학위를 받은 그들도 분명히 '노동자'이다. "교직은 신성한 것인데,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진노했다는 고위층의 발언은 무식의 소치여서 부끄러울 따름이니 그냥 빨리 잊자.

전문직 노동자, 두뇌 노동자, 화이트 칼라, 소수 특권층 노동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자신의 고급 노동력을 판매한 임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17-18세기 메뉴팩쳐 시대의 수공업적 노동자는 '장인'이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대학교수 급이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숙련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거의 평생이 걸리기도 했다), 일하는 모습도 지금의 노동자와는 전혀 달랐다.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했고, 점심 시간에 아내가 점심을 싸 오면 점심 식사를 하느라고

두어시간씩 소비하기도 했다. 파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었으니, 새삼스럽게 단결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다.

식민지 경제가 상품의 수요를 전세계적으로 창출하였으나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일손은 턱 없이 부족했으니 노동자는 더욱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노동자는 해체되는 농촌의 장원으로부터 도시로 몰려 들어 도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날품팔이 대중(영화 '노틀담의 곱추'나 '왕자와 거지' 따위에 등장하는, 이리 쏠리고 저리 몰려 다니는 무리들을 브라)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특권은 기계가 생산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파괴되었다.

노예제 사회에도 기계는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도 기계는 있었다. 다만,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스 시대에 이미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으나, 귀족 정원의 분수 등 오락시설에만 주로 사용되었다. 기계가 생산에 투입되면 귀족의 사유재산인 노예의 값이 하락할 뿐이었으므로 기계를 생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수력을 이용한 방앗간 기계를 제작한 사람들을 로마 황제가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린 일도 있었다.

기계의 사용은 귀족의 뜻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수공업적 노동자)의 사활을 건 이해관계에 의해 비로서 기계가 생산에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계파괴운동의 숨은 뜻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생산에 기계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자동화, 기계화는 19세기에 이르러 섬유산업, 방앗

간 등에서 거의 완벽한 완성태에 도달했고, 섬유노동자, 방앗간 노동자들을 쓸모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기계 파괴 운동'은 이에 대한 특권층 수공업적 노동자의 저항이었다. 당시 기계를 파괴했던 노동자는, 결코 역사 속에서 헐벗고 굶주려 온 노동자 대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출발

그와 같은 특권층 노동자들이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 노동조합(Trade Union - 이 말 속에 '노동'과 관련된 의미는 없다)이었다. 달갑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수' 또는 '반동'이라는 또 다른 성격을 그 내부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칫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경향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숙명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도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다.

대다수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은 생산에 기계가 투입되면서 분쇄되었으나 여전히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다. 누구였겠는가? 다른 아닌 '기계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다. 기계의 수요가 대량으로 요구되었으나, 기계는 여전히 소수의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막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태부족이었다.

생각해 보자. 이 고숙련 노동자들의 특권은 언제까지 유지되었을까...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가 보급됨으로써, 또는 기계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려 먹는 공정이 개발됨으로써 그들의 특권 역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원료로 완제품까지 뽑아내는 섬유산업, 정미산업 등과는 달리, 수만개의 부품들이 여러곳에서 별도로 제작되어 나중에 공장에서 조립되는 기계 생산 공정은 19세기 산업혁명 완성 후에도 오랫동안 기계화, 자동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숙련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간섭에 대해 자신들의 숙련된 수공 기술을 무기로 능히 저항할 수 있었다.

테일러-포드 시스템(Taylor-Ford System)의 등장

공정이 복잡하여 기계화, 자동화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노동자를 기계처럼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복잡한 부품 생산 및 기계 조립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계처럼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테일러 포드 시스템(Taylor-Ford System)이었다.

테일러 시스템은 주로 선행적 부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었고 포드 시스템은 주로 조립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을 물 흐르듯이 진행시켰다. 그 생산 공정에 갇힌 노동자는 물결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물방울 같은 존재에 불과해졌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노동자의 특권을 분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격변이 수반 되었다. 테일러 포드 시스템이 전 세계를 관철하는 데에는 50년의 세월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필요했다.

정보화 사회의 노동자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도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정보화 사회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자. 지금의 고숙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컴퓨터를 다루는 석사, 박사 학위 노동자, 프로그래머, 영화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산업 종사자, 프로듀서 등이 그들이다. 정보화 사회는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들의 특권은 점차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즐겁게 착취 당하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작은 예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자를 Pan Opticon System('전감시체제' 또는 '범감시체제'로 번역하면 될 듯)은 거의 완벽하게 통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한 명당 하나의 사무실을 갖고 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듯 보이나, 빌 게이츠는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미국 본사 말단 사원의 업무까지 철저하게 지시 감독할

수 있었다지 않은가.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두뇌 노동자이든 육체 노동자이든, 글자 그대로 생산 과정 전체가 '유리처럼 투명한 공장'이 되는 것이다. 이 '유리처럼 투명한 공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농촌의 읍사무소에서부터 대재벌의 빌딩까지 관찰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반도체 칩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역사 속에 처음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

지금까지 살펴 본 전개 과정과는 달리 우리는 지금 최초의 이질적 변화에 직면했다. 19세기의 산업혁명 이래 노동은 일직선적으로 탈숙련화의 방향을 취했다. 또한, 노동의 탈숙련화는 곧 노동자의 탈권력화를 뜻했다. 반대로 노동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노동자의 권력도 자동적으로 상승되었다.

이 불변의 등식이 최초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 노동자의 출현 이래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노동의 숙련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면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권력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8년 동안 현장의 단순 직종에 종사해 온 노동자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취업한 고학력 노동자의 생활이 겉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 외국의 박사학위가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이야기의 출발

두뇌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적 양극화가 완화되는 이 역사적으로 기묘한 현상에 직면하여, 우익의 낙관론자들은 노동의 숙련화를 즉각 노동자의 권리 상승으로 등치시킨다.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자의 복지가 향상되어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와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 또한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한편, 전통 좌익들은 반대로 탈숙련화의 계속적인 심화를 아직도 집요하게 도출하고 있다.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노동 과정도 조만간 탈숙련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리라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 기계가 투입됨으로 해서 숙련 노동자의 탈숙련화가 초래되었던 것처럼, 정보화 사회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 역시 새로운 기술에 의해 조만간 탈숙련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것은 곧 노동자의 탈권력화를 결과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숙련을 요구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노동자의 권력은 숙련도에 비례하여 상승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옳겠는가.

분명한 것은 이 기묘한 현상이 바로 새로운 정보화사회 노동운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권을 상실해 가는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의 처지가 장래 노동운동 속에서는 희망이 되는 것이다. 이 현상에 조응해야만 노동운동은 반동의 높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출발시켜 보자.

동성애자의 인권

서동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지난 6월26일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었던 날 한국사회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성인권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적인 일이 있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5개의 남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연합해 처음으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공동대표 서동진)의 발족식을 가진 것이다.

6월27일은 전세계 남녀동성애자에겐 굉장히 뜻깊은 날이다. 69년 6월27일 미국 뉴욕 '스톤월 인'이라는 어느 게이바에 경찰이 잣은 급습을 벌여왔었는데 이에 시달려온 남녀 동성애자들이 처음으로 항의를 하면서 가벼운 투석전을 벌였다. 이는 장기투쟁으로 발전하고,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면서 뉴욕 지역에서 있었던 남녀동성애자들의 폭동에 대한 화답하는 뜻으로 전국적으로 폭동이 벌어진다. 이는 아마 지난 몇 세기동안 있었던 동성애자 정체상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동애자를 자신에 의한 최초의 저항으로 평가된다.

이런 의미에서 게이해방운동이나 레즈비언운동은 크게 스톤월 이전과 스톤월 이후로 나뉜다. 이 사건은 게이해방운동의 역사, 동성애인권운동의 역사 전체를 크게 가늠하고 있다. 그래서 6월27일을 전세계 모든 동성애자들이 뜻깊게 기린다. 지난 해는 바로 스톤월항쟁 25주년이었다. 전세계 레즈비언이 모여 행진을 하고 게이, 레즈비언만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도 연다. 작년 뉴욕에서 1백30만 명 정도의 게이, 레즈비언들이 모였는데, 아마 단일 정치집회로는 세계 최대였을 것이다. 재미한인 게이, 레즈비언들이 이 대회에 참석했는지는 잘모르지만, 아마 집단적으로 참여한 것은 일본정도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동북아 지역내에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몇몇 국가내에서는 지금 게이, 레즈비언 운동이 싹을 트우고 있다.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전세계 게이, 레즈비언들이 뜻깊게 기리는 스톤월항쟁을 기념하고, 동성애자 스스로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인격적 멸시등을 이겨내고 삶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6월 26일, 6월 마지막주를 동성애자 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소식지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성애자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는 '게이커뮤니티'라 불리는-여러분은 게이들의 매음굴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신당동, 이태원 지역과 방문자들에게 배포하고,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발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자운동의 전망, 강령을 발표하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운동이 걸어갈 길, 현재 치해있는 실상등을 이야기했다.

현재 한국동성애자인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5개이다. 지난 94년 초 만들어진 '친구사이'라는 남성동성애자 인권모임이 있고, 얼마뒤 발족한 여성동성애자 모임 '끼리끼리', 그리고 올초 3월 연세대에서 만들어진 대학인권모임 '컴투게더', 그리고 서울대의 '마음 001', 지난달 처음 문을 연 고려대의 '사람과 사람' 등이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스스로 인권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적인 모임이 만들어졌지만, 모임 어디에도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삶의 질이 어떻게 인권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지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제앰네스티(AI)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서들에 준거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삶을 이해하기란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는 바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삶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삶의 질이 인권문제로 연결되기에 아직 미흡

80년대 미국사회는 동성애 공포증, 에이즈 위기로 대표될 수 있는 집단적·도덕적 공항을 경험했다. 이미 알고 있다싶이 60, 70년대 우리는 성혁명, 성개방이라고 알려진 급격한 변동을 체험했다. 채이스전법이 확대되고, 피임법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이혼률이 급상승하게 되고 결혼제도, 가족제도가 변화되었다. 여성해방운동은 물론 게이, 레즈비언해방운동이라 불리지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족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가족제도등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었고, 전통적이고 영속적인 1부1처제에 의존한 가족제도가 상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는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60, 70년대 우리가 흔히 사생활제도라 부르는 친교형태, 연애형태, 결혼제도등이 전반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던 백인 중산층 남성을 중심으로 미국사회 내 대다수 사람들이 심리적 위기를 경험했다. 70년대 이후 닥친 미국을 비롯한 유럽자본주의의 경제위기가 정작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심리화함으로 레이건·부시정

권이 집권에 성공했다. 당시 도적적 다수파로 불리는 -한국사회로 치면 사회정화운동 협의회에 해당- 이들은 엄청난 전통적 가족의 가치, 결혼의 가치를 복원시킨다는 주장 속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러한 도덕적 공황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했는데, 8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에이즈라는 불치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동성애자의 역병, 동성애자의 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심리적 위기가 하나의 희생 양을 잡게 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 도덕적 공황이 이루 어지게 된다. 최근까지 미국사회에서는 _이른바 게이배팅(gay bashing)이라_ 불리는 것이 심지어 청소년노동자계급 하위문화의 유행이 되었을 정도다. 미국 대도시는 물론 남부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동성애증오형 범죄, 특히 이성전환주의자라 알려져 있는 여장남자나 남장여자를 거리에서 발견하게 되면 구타를 하게 되고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된다. 다수의 살인이 실제로 죽음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죽음 뒤에 완전히 멀절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증오형 범죄의 경우 사체를 잔혹하게 찢어 발기는 형태로 범죄가 이뤄진다. 세계 최대의 게이공동체를 갖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가장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게이배팅이 횡행하였다. 같은 문제에 눈을 뜨면서 동성애자의 권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8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동성애자공포증, 에이즈위기 와중에서 반게이적 폭력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지역에 횡행하게 된다. 처음으로 동성애자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동성애자 운동세력을 제외한 다수 인권운동세력들이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것은 대부분 반게이적 폭력에 대해서이다.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동성애자 살해율과 동성애자에 관한 에이즈위기시대 내에서의 에이즈공포증, 동성애공포증이 맞짝을 이루면서 도덕적 위기를 뒤덥게 된다.

실제 경찰을 중심으로한 사법제도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분명히 깨닫을 수 있을 만큼 다반사로 이뤄진다. 감염가능성이 있거나 감염여부가 있는지 짐작되어지는 인물을 강제로 구금, 격리하는 조치가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있었던 동성애자에 대한 강제구금이나 처형등이 실제 이슬람국가에서는 재확인될 만큼 다반사로 이뤄졌다. 공적 권위를 빌린 개별의 인권침해와 폭력등이 명시적 사실로 등장한다. 이에따라 반게이적 폭력문제에 눈을 뜨게 되고 동성애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에 이른다. 국가적 권위를 빌린 여러가지 폭력이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므로,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바로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반게이적 폭력에 직면하면서 관심을 갖게된 동성애자의 인권문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성, 혹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강제 구금되거나 혹은 고용기회에 위협을 받거나, 이 성적 지향성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냐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서구와는 현저하게 달리 유리한 동성애자들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한다. 이것은 각 사회 동성애자들이 처한 삶의 지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한 동성애자들의 삶, 그리고 한국사회 동성애자들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동성애자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개념들이 있다.

여직껏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식에 준거해서 동성애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들여다 보아왔을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은 게이붐 혹은 동성애자붐이라고 불려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여러 대중매체에서 동성애자들의 삶을 다루는 프로그램 제작되었다. 물론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삶을 호도하고 삶의 권리에 대한 침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해서 동성애자들의 삶을 얼마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먼저,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호모'일 것이다. 호모는 호모섹슈얼즈 즉 동성애자의 준말이다. 이름자체로는 이성애자를 지칭하는 컨트롤섹슈얼즈와의 구분 속에서 짐작 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19세기 후반 처음 등장했고 사실 게이해방운동을 비록한 다수의 동성애인권운동세력에서는 기피하고 거부한다. 이 개념은 그 이전에 죄악으로 불려졌었던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행동을 말하기 때문이다. 실제 동성애자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은 특수한 인간형으로서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는 존재한 바가 없었다.

19세기 후반 처음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동성애자 성운동을 한다는 발상들이 생겨나고, 동성애자 하위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이전까지는 동성애자라는 것은 존재한 바도 없다. 동성애를 지칭하는 소돔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거의 서구사회에서는 소돔이라 불렸다), 이 말뜻은 동성애자 성행동 뿐만 아니라 생식이나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불법적인 부부관계의 성행동(기마체위동)은 물론, 수음 · 임신중절 등을 지칭한 개념이다. 낙태, 피임과 그 시도역시 소돔이라 불렸다. 당시로서는 불법적인 성행동이라 간주되는, 비윤리적인 성행동의 모든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것이 16, 17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업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책임을 지는 어머니, 자기 인생자체를 적어도 독립을 하기전까

지는 부모에게 내맡기고 살아야 하는 자녀들로 이뤄진 근대 핵가족제도가 초기에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점차 확산되어 가면서 전통적인 결혼관계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성의 '틀' 전체가 다시 마름질되어 진다. 바로 이즈음 성에 대한 태도가 변경된다. 성의 대상과 목표를 중심으로 성을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마련된다. 소돔이라는 개념은 변화된 성에 제도에 따라 성을 분류하는 개념으로는 별반 필요없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도착애라는 말은 '성의 대상이 바뀌었다, 꺼꾸로 되어 있거나 빼뚜로 되어있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성의 대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소망과 욕망의 대상이 이성이나, 동성이나 동물이냐 아니면 특정한 사물이냐(예를들면 텔이나 가죽이냐 아니면 소년이냐)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성의 대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착과 변태라는 뜻이다. 이같은 개념이 19세기 후반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치 놀라운 발견인냥 성이 의학화된다. 이에 화답하는 의미로 처음으로 동성애자 하위 문화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당시 사회주의운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반자본주의운동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계몽의 빛을 통해서, 과학을 통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도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부르조아적 금기, 부르조아적 몽매함 등을 넘어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동성애라는 개념은 16, 17세기 가족제도 변화와 함께 등장

1910년대 러시아혁명을 전후로 해서 유럽 전역은 1차 성혁명을 겪는다. 이를 주도한 것은 주로 성과학자들과 성의학자들이었다. 처음으로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변화는 동성애가 일시적인 행동이며 삶의 정체성으로 수긍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는 동성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강제구금될 이유가 없어졌다. 그들은 단지 비정상인이기 때문에 혹은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치료나 처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성애와 관련된 수많은 가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호모섹슈얼즈라는 명칭은 사실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그 시기에 동성애와 관련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던 역사적 국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 점에서 동성애라는 개념은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일종의 질병으로 부른 뜻이 담겨있고, 그에 대한 치료나 처치 혹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스며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의 공산주의자였던 헤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동성애 자모임을 만들게 된다. 당시 킨제이리포트가 발표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 관한 모

든 것은 마스터즈와 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인데, 이들은 은밀한 가족생활, 결혼관계, 성생활, 성적관계 내 모든 다양한 행동의 대부분을 마름질해 놓는다. 우리에게 성의 문제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알게모르게 오르가즘의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에는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20세기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이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체제가 성장했다가 소멸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생활을 통해서 20세기를 바라본다면 후세의 역사가들은 오르가즘의 시대였다고 부를 것이다. 비뇨기과의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남성의학교수에 이르기까지 성교육등 성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이 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 처음으로 이들에 의해 성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육체의 생리적 매카니즘의 문제로 돌려지게 된다. 오르가즘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성에 대해 빚어내고 있는 여러가지 태도나 의미나 모든 것이 이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조로나 지루란 말도 이들에 의해 고안되었고, 이같은 변화들 속에서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의 다양성을 수긍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20세기 동성애를 '성의 다양성'으로 수긍하는 움직임 등장

2차대전을 전후로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히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결혼제도가 이 시점부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전례적으로 나타났던 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율적일 수 있는 자기결정의 시기인 '사춘기와 청소년기'가 과거에는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일반민중에게 확산되면서 이같은 시기가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다종다양한 비가족적인 관계, 비결혼체위 내에서 다양한 친교등을 맺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전례없이 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종다양한 성의 형태, 친교 형태들이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게 된다.

당시 킨제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된 바대로 전적인 동성애자와 전적인 이성애자를 각각 0점과 6점으로 놓고 미국의 1만8천명을 대상으로 대표 표본조사를 벌인다. 그 결과 무려 37%가 넘는 사람이 동성과 오르가즘을 경험한 바가 있으며 10% 정도가 전적으로 동성애자와 성체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놀라운 보고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킨제이보고서가 가져왔던 커다란 충격은 동성애와 이성애가 연속적이며, 절대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동성애자 인구의 비율이 실제 미국 전체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실제 킨제이보고서가 가져왔던 놀라운 효과는 바로 전자이다. 따라서 성의 대상, 목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성제도, 성전통에 대해 심각한 반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다.

킨제이보고서의 충격-동서애와 이성애의 절대구분 불가능

동성애자를 소수민족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생겨난다. 소수집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동성애자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뤄진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이너리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자기결론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마이너리티라는 개념은 스스로 정체성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재구성해야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회 지배문화와의 갈등 속에서 항상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부단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이다. 이성애 중심적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은 마이너리티다'라는 개념은 동성애 역사에서는 획기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동성애운동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이같은 헤레이의 결론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에서 (주로 공산주의자 청년, 게이들을 중심으로) 메타춘협회가 만들어진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빌리티시의 딸들'이라는 모임이 활동을 벌이지만 이는 매카시선풍에 의한 대대적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함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사라져간다. 모든 전쟁에서 주된 희생자들은 동성애자였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홀로코스트가 몇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2차대전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홀로코스트였다.

제국주의전쟁을 이끌기 위한 독일의 나찌즘은 전쟁을 계르만인종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가설들을 근거로 민중적 동원체제를 수립하게 된다. 당시 아리아인종을 더럽히는 외부의 적으로서 유태인들과 실제로 아리안인종 종족을 번식·재생하는 의무를 저버린 동성애자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다. 동성애자와 유태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강제수용소에 쳐넣고, 가스실에서 처형해 간다. 당시 유태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표지를 가졌는데, 수많은 유태인들이 강제수용소과 가스실에서 죽음에 직면한다. 동성애자의 경우 분홍색 역삼각형을 가슴에 붙이고 유태인과 못지않은 숫자가 감옥, 강제수용소, 가스실에서 사라져갔다. 해방이 되고 난 뒤 수많은 유태인들이 전쟁기의 전쟁범죄에 관한 피해자들로서 보상을 받지만, 석방되었던 수많은 동성애자들은 당시 '페라고라프 175'라는 악명높은 법에 의해 강제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새로 수립된 독일민주공화국정부에 의해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 10, 20년 감옥생활을 강요받는다.

최근 몇 년동안 광주항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70년대부터 동성해방운동이 제기되었는데 보상문제가 계속 늦춰져오다가 얼마전부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당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처형되거나 강제수용되었던 동성애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나찌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극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홀로코스트, 매카시즘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진 동성애자에 대한 이잡듯한 마녀사냥 같은 것들은 항상 나타났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들이 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인 공포들을 밀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기에는 위와 같

은 양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된다.

모든 전쟁의 주된 희생양은 동성애자

60, 70년대 흑인공민권운동, 시민권운동이 고양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익히 알고있는 게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대부분 게이라는 명칭은 이성전환주의자, 이를테면 여장남자들을 -마스카라를 하고,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고 가슴있는-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트랜스젠더 transgender 혹은 트랜스섹슈얼 transsexual)이라 불리는 이성전환주의자라 불리는 독특한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성적 소수집단이다. 게이라는 이름은 말뜻에서 밝은 낙관적인, 명랑한 뜻을 갖고 있다.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이 의학이란 권력을 통해 자기자신에게 부여되었던 이름과, 신학과 교회법을 통해 사생활을 규제하던 제도 속에서 부여되었던 '소돔놈'이라는 모든 이름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부르기 위한 이름으로, 삶의 자긍심을 갖기 위한 이름으로 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많은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자리잡는다.

레즈비언이란 이름은 또 다르다. 성과 사랑이 명백히 분류되어 있고, 성을 중심으로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에 관한 모든 이야기나 주장이 능동적일 수 밖에 없는 의미는 모두가 남성적이다. 이와같은 탓에 남성 동성애의 정체성은 20세기 초반부터 서서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성들은 항상 비이성적 존재, 결혼을 통해 육체에 숨어 있었던 성이 살아난다는 식의 성에 관한 일반 신념에 비춰볼 때 여성동성애 특히 성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적 성정체성이 여성들 내에서 발달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였다. 여성 간의 우애나 친교, 친밀감이라고 불리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한다.

고대 그리스 여류시인이었던 사포(4대 시인중의 한 명)가 남긴 대다수 시에서 여성 간의 친교, 친밀감이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사랑, 성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풍부히 나타나 있다. 당시 추앙받고 있던 사포 이름을 따서 여성동성애를 심미적으로 사포이즘이라 불렸다. 여류시인 사포가 살던 에게해 연방의 섬이 레스보였다. 레즈비언이란 말은 레스보 섬사람이란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포이즘이라 불리던 고대 그리스 여류시인이 나누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를 말한다. 그것이 50, 60년대를 거치면서 게이커뮤니티가 등장하고 여성(레즈비언)들 스스로 성적 자율성의 획득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성동성애적 정체성도 가시화되기에 이른다.

'게이'는 삶의 자긍심의 표현

한국사회에서 10여년전부터 낙원동을 중심으로(그 이전에는 명동에도 있었다고 한다), 몇몇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게이커뮤니티라고 하는 게이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공공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경험하고 사랑을 눈뜨고 인격적 친밀감을 통해서 친교에 도달해 영속적인 결혼이나 관계를 맺게되는 이성애자는 달리 동성애자는 수적으로 소수일 뿐만아니라 친교의 기회마저 현저하게 제약당했다. 친교의 가능성을 위한 공간들이 형성되면서 동성애자 하위문화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거대한 동성애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이같은 과정을 갖게 된다.

이 변화들이 10여년전부터 나타나게 되면서 이른바 르뽀를 통해서본 낙원동, 신당동 내 동성애자 하위문화가 형성된다. 몇 개의 바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이 모여들면서 교의를 맺고 교분을 갖는 공간, 게이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실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욕망, 동성애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이해, 이 두가지 사이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것은 자생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자기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이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일반은 이성애자, 즉 일반인을 뜻한다. 자기네들은 이등 시민이라는 것이다.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의미와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소리체계들이 만들어진다.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의미소통의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하위문화의 체계와 코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여러 형태로 다듬어져 왔다.

동성애자, 호모 세슈얼즈라는 이름은 지난 세기초에 만들어졌다. '동성애'라는 의미가 동성애가 질병이고, 동성애를 치료하거나, 교정하거나, 처치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고 앞서 얘기했다. 반면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명칭은 실제 자기 삶 전체를 담고 있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를 함유하는 개념이다.

'동성애'는 치료, 교정의 의미 포함

몇 가지 동성애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이고, 암묵적인 가정들을 되짚어보면서 동성애자의 권리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자.

첫째, 어떻게해서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한결같이 듣는 얘기다. 사람과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 발생원인을 알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인과론적 지식에 틀 자체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인과론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합리적으로 가공하고 변

형시켜야 한다는,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근대 특유의 사고관과 지배관을 반영하고 있다. 동성애의 원인에 관한 발상, 이를테면 2개의 가설들이 지난 1백여 년동안 최신의 주장들에 힘입어 계속 반복되어 왔다. 생물학적 결정, 혹은 사회학적 결정이라 부르는 가설부터 최근에는 유전자 구조의 오류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염색체와 호르몬, 가계구조에 있어 문제등등 별별 가설들이 지난 1백여년 동안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등장했고, 이에 따른 수많은 사회학적 가설들이 등장하였다. 사회적 결정, 이를테면 성장과정 속에서 성역할이 실패를 했거나 오이디푸스 컴프렉스를 거쳐 구순기, 항문기, 생식기를 거치면서 구순기 고착에 빠져 그럴 수 있다는 가설에서부터 혹은 편부, 편모 슬하에서 성장했을 경우, 아니면 여자누이들이 많은 가족에서 성장했을 경우 등의 가설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회학·인류학·심리학·정신분석학·의학·성생리학·분자생물학 등 최근 다양한 가설들이 주장되었다.

지난 10여 년동안 전례없는 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심지어 '성전쟁'이라 불린다. 10여년동안 미국·유럽의 유력 보수 주간지, 월간지 통계를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커버스토리는 "마침내 동성애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수많은 가설들이 주장되지만 결코 어느 것도 우세를 점하지는 않는다. 단 하나의 반례만 나와도 무너지고, 끊임없이 아무런 쓸모없는 논쟁이 되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모든 입장들이 사실은 동성애의 원인을 밝혀낸으로써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교정·치료·치유한다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74년 미국의 정신병리학협회에서 발행한 진단통계편람(DMS)에서는 동성애를 질병항목에서 삭제했다. 아마 데카르트이후 모든 근대과학의 여러가지 업적중에서 최대의 스캔들이자 해프닝이 아닌가 싶다. 또는 근대과학의 허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질병인가의 여부는 그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물리적 메카니즘과 그것이 갖고 있는 합법측적 성격에 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질병항목에서 삭제한 것은 투표를 통한 것이다. 정신병리학협회 소속 회원의사들이 다수결로 동성애를 질병학목에서 빼자고 결의해서 동성애가 질병의 항목에서 제외된 것이다. 너무나 우스꽝롭고 해괴한 일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 속에서 암묵적으로 성에 관한 인식론을 엿볼 수 있다.

바로 동성애에 관련된 어떤 호의나 연민등은 실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이해 속에서 이미 윤곽지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다. 그것이 아무리 동성애자의 삶을 옹호하고 사랑하고, 감싸안아야 한다는 그많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성애자를 바라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우리시대의 삶이 이해질서, 의미질서에 갇혀있는 한, 동성애자의 삶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동성애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성애적 지향성에 따른 어떠한 침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동성애란 무엇이냐, 거기에선 섹슈얼오리엔테이션 즉 성적 지향성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 개념이 썩 올바른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는 동성간에 성 행동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 성적 소망을 갖고 있다는데서 비롯된 여러가지 행동때문에 비롯된 문제들이다. 사실 동성애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인기도 하다. 대부분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실제적 모욕이나 삶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적 삶때문이고, 동성애적 정체성 때문에 비롯된다.

따라서 그들이 동성애적 성행동을 했는가, 안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실제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중에서 게이, 레즈비언이 소수집단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삶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가지며 물질적 힘을 가다듬어 왔다. 하지만 동성애를 제외한 다른 성적 소수집단도 특히 이성전환주의자들이나 복장도착자(transvestite)들은 미국사회나 대다수 사회에서 상당한 하위문화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겪는 피해, 끔찍한 폭력들은 해명할 길이 없다. 문제는 성이라는 것이, 인권운동이 가장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 가시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정한 공적 사실에 준거해서 그 권리를 옹호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민사회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얼마간 사회화되어 있는 사회적 사실들을 겨누고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삶, 동성애자 인권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동성애는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심리적, 주관적인 삶의 사실로 존재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삶의 권리 침해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때문에 가볍게는 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선택한다.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고용을 반대하는 것, 그 반대에 우리 스스로 항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의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운동인데, 이것이 바로 서구사회 동성애자의 질과 다른 점이다.

50년대 이후 동성애자의 삶이 자기네 스스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coming out”을 외쳤다. 동성애자의 운동은 coming out 이라 불리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슬로건은 너만의 방에서 벗어나 오라는 얘기다. out of closed 라는 말은 동성애자 운동에 있어 최대의 슬로건이다. 노동자계급의 최대 슬로건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슬로건이다. 그래서 coming out을 해야된다는 것, 그것은 실제로 전반

적인 변화 속에서 미국, 유럽과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꿀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coming out을 통해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여러 공공영역 내에 존재하며 심지어 직장에서, 대학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일반적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게이로서의 삶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

동성애자 최대의 슬로건 coming out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사회에서 누군가 나와같이(제가 유일한 coming out을 한 동성애자가 되었는데), 게이로서 스스로 coming out을 한다는 것은 폐가망신과 동일한 말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타인들과 인격적인 모욕을 감수하면서 자기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 함께 운동하는 후배들이 여러가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욱해서 coming out해서 운동한다고 할 때마다 나는 극구만류한다. 이것은 도덕적 연계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주전 지방대학 강의를 가서 겪은 일이다. 요즘들어 여러가지 형태의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성과 동성애와 동성애 인권’란 제목으로 강의청탁이 와서 부산대 강의를 마치고, 한 지방 기독교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도착해보니 학교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동성애자 출입금지’라는 것이다. 중강당에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폐쇄되고 단전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당시 학생회에서는 항의농성을 하고 다시 정경대 강의실을 빌려 강의를 진행하려 했는데 정법대 학장이 행정학과 학생들을 동원해 임시 특강을 한다며 강의실을 또 폐쇄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학교밖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60, 70년대에는 그랬었다. 남부주립대학의 흑인학생들이 입학자격을 얻고도 학교측에서 폐쇄하는 바람에 주연방군이 동원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는 한국사회에서 깜둥이구나’는 생각을 했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삶, 동성애라는 하나의 사실은 실존적이고 심의적이며 주관적인 것이다. 인권문제에 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이 이미 사회화되었고, 공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실에 근거해서 삶의 질과 권리의 분별하고 권리침해와 권리박탈에 대해 방어적,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면, 그간의 인권운동의 전망, 인권운동의 씨앗 속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운동이라 불리울 만한 것은 전혀 없다. 인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그 선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사실의 형성, 이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성애자의 삶에 있어 인권의 문제를 조경하고 대입하기는 너무나 곤란하다. 심지어 동성애자 스스로 동성애자운동이라는 문제에 기피한다. 동성애자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4개 대학

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주장중 얼마간 일리 있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 너희들이 낙원동에서 몰려 놀기만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암묵적인 무시, 암묵적인 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운동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컴투게더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뒤에 온나라가 이잡듯 동성애자에 대해 며들고 나섰다. 내가 대학내에서 동성애자모임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실제로 삶의 사적 사실로서 동성애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를들면 대학생 즉 대학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된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회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을 사회내에서 함께 놓고 사고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이성의 사회내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회적 삶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는 항상 반동성애적인 발전 등을 질문하게 된다. 물론 예상했었고 역시 예상대로였다.

커튼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동성애자 모임과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수방관 한다. 암묵적인 인정인 것이다. 물론 그때 동성애라는 것은 동성애적 욕망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특정한 성행동으로 동성애를 가둔다는 조건에서다. 즉 동성애자로서 사회 속에서의 삶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동성애자 스스로 동성애자문제 기피

동성애의 모임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동성애가 뭐 그리 어려운 거냐,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동성애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을 성적인 소망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것이 동성애가 아닌가. 동성애를 특정한 성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다.

여러분이 동성애란 말을 듣자마자 연상하는 역겨움, 거스름은 사실 동성애를 특정한 성패턴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항문성교가 아니냐라는 것이다. 성행동의 패턴, 이성애를 하는 패턴 중에 항문성교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가운데 항문성교하는 성행위의 패턴 비중은 이성애들 내에서 존재하는 이성애의 항문성교의 패턴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낮다. 이성애를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성행동의 패턴에 비교한다면 그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항문성교냐 아니냐 어떤 성행동의 패턴을 따르느냐에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왜 동성애는 특정한 성행동의 패턴으로 환원되고야 마는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애는 질삽입 성교애의 집단인가? 아니다. 우리는 이성애는 질삽입성교애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성애라고 불리우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성다움과 여성

다움에 관한 태도, 가족과 결혼제도 속에서 자기가 맷고 있어져야 할 관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특성으로 비롯되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와 공동체적인 관계, 또 나이먹음에 관한 자세, 태도등 이 모든 것들을 두루 아우른 다양한 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것의 정체성들이다. 이것들이 이성애라면 역시 동성애도 그와 같다.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간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맷고 있는 친밀한 삶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부부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인가는 문제 속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동성애적 정체성이다.

하지만 결혼관계와 가족관계 혹은 이성애적인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을 가진 성은 항상 성행동으로 환원되고 이같은 수모를 겪는 것이다. 사실 동성애인권운동을 해나간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부당함을 고발하는 절차만으로 동성애인권운동은 불가능하다. 그같이 협소한 인권의 범주 내에서 인권이라는 개념과 그 의미의 무기를 대입할 수 있을 만큼 동성애자의 불행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불행하고,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단념한다. 미국사회 전체 청소년인구 중에서 수많은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하는 청소년의 절대적 비중이 게이·레즈비언이고, 그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30분에 1명씩 자살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지난 8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한국사회 전체에서 보면 자본주의적인 변화, 가정구조의 변화,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속에서 틴에이저라 불리는 층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은 쉽게 눈을 뜨고 소위 사춘기가 저연령화되는, 사춘기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청소년 인구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청소년 자살 인구중에서 상당한 비중이 바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 때문이다. 내가 coming out을 했을 때 사회부 기자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비일비재한 자살사건들, 특히 여고생들의 동반자살의 경우 상당수가 성적 지향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동성애는 성적 지향성이 다른 것일뿐

물론 이와 같은 물리적 폭력들은 이루 말할 수도 많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도 모른다. 한국사회에서 수많은 정신병리학자들이, 신경정신과를 찾는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지 모른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그것을 우울

증으로 처리해서 그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여름 동성애자인권학교를 열었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한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3년째 하루에 2번씩 강제로 수면제처방을 받고 있다고 했다.

동성애에 대한 성적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정신병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와같은 상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공포를 유발한다. 치료는 동성애적 상상, 욕망을 유발할 경우 그에 관한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40년대 일부 야만국가에서 행해졌던 전극치료요법, 페닉스에 지뢰를 끊고 동성애적인 상상을 했을 경우 전기자극을 가해는 아주 유치한 방법이 그것이다. 이는 자극 반응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불쾌감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와같은 가설에 근거한 동성애에 대한 치료가 횡행한다. 이것은 엄격히 불법행위이고 어마어마한 인권침해이고 불법시술이다.

하지만 국내 모든 정신병리학자들이나 대개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여전히 이같은 처방과 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지향성을 질병으로 분리한 채 강제 처방과 시술행위를 강요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감옥, 군대 등 단성적인 성제도라 불리는 여러가지 사회집단 내에서 동성애자나 이성전환주의자로 간주되어지면 여러 사람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이나 강간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뚜렷한 통계자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

사실 그것은 남성다움을 사랑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간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외에도 게이 청소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 의료제도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정신병으로의 분류와 강제적인 처방과 시술, 이는 명약관화하게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인권의 문제는 제기된다. 동성애에 대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 만약 우리가 그 개념들을 좀더 넓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성애 인권운동이야말로 양심수나 정치범 문제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지난 20년동안 한국사회의 인권운동, 인권운동의 발상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했었던 어마어마한 기여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반문할 수 있는 기회를 동성애자 인권문제는 제기한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권이라는 범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다. 그것은 사적인 문제, 주관적인 삶의 진실과 연관되는 문제로 바라본다는 인권의 범주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동성애자 불행은 너희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사회 어떤 집단적인 삶의 사실로도 확인할 수 없고 인권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권운동이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가능성은 그것이 아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가늠키 위해서는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동성애자로 분류하는 사회적 우리시대의 어떤 의미있는 사회집단의 삶의 질로서(삶의 공통성, 사회적 사실) 동성애가 자리잡아야 한다.

수많은 개별개별의 동성애자들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애적 욕망을 가지고, 동성애적 성행동을 하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정체성은 이성애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나이먹음, 남성다운 태도-은 모두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애적 성적 특성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비롯되어진 삶의 위기와 굴절은 그들의 삶에 대한 불행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동성애 인권운동가라기 보다는 심리치료사라고 생각한다. 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개별개별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동성애적 성정체성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경우에 죽지말라고 하는 것이다. 조율증등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삶의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마 우리사회를 지칭하고 있는 사회운동이라는 개념, 인권운동이라는 범주를 적용한다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뜻은 그 이름에 걸맞게 넘어야 할 산과 경로들이 너무나 많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인권운동을 인권운동으로 반사유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범주를 전환적으로 사유해 볼 필요가 있는가는 이와같은 문제들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이성전환주의자 인권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일은 이성전환주의자에 관한 것이다. 이 여장남자는 동성애자와는 달리 제2의 삶을 살 가능성이 없다. 명백히 인권침해의 삶을 살고 있다. 첫째 군입대문제이다. 20대 초반의 많은 성전환주의자들이 자신의 삶을 여성으로서 이해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정체성, 생물학적 귀속에 따라 징집여부가 결정되고, 강제군입대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군입대는 여자으로서 집단강간 캠프에 같하는 꼴과 같다. 상당한 성폭력과 성추행, 성강간을 감수하는 것이다. 군입대 면제요구할 경우 정신질환자가 되어 시민권이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한다.

둘째, 성전환수술문제이다. 현재 연대 세브란스병원, 고대 부속병원, 동아대 부속병원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진다. 외국의 경우 의료보험의 완전한 혜택을 받고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뭉치돈을 갖고가야 수술이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3-4천만원을 요구하고, 동아대 부속병원은 1천5백만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수술을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음성적으로 형성된 약국도매상에서 거래되는 '게포'를 사서 복용하거나 스스로 주사한다. 게포는 여성호르몬제인데 폐경기에 이른 40대 여성들이 수임능력을 연장키

위해 복용·처방받고 있는 것이다. 호르몬구조는 조그만 차이만 일어나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40대 여성이 폐경기 때 수임가능기 위해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약화에 시달리는데 심지어 암에서 여러가지 질병에 까지 시달린다.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강뿐 아니라 그가 누릴 정상적 삶의 일체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경우 이같은 직접적 물리적 건강의 위협, 자기 삶의 피해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회생당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할 만한 위기를 겪는 것이다. 대다수 이성전환주의자들은 숙명으로 간주한 채 취업을 못하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한 도덕적 변태자들의 성노리개가 된다. 이러한 곳이 전국에 30개 있는데, 이 태원이 가장 고급스런 곳이다. 이처럼 자기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성전환주의자들을 제법 많이 만나게 되었다. 이를 모임을 발족하여 했는데 실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주체를 만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성전환주의자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적 소수집단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근 해 우리사회를 지배한 주요 담론은 성(性)이었고 특히 동성애였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올해를 수십년간 우리사회에 누적되어 온 충체적 부정과 부실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라는 끔찍한 현실로 나타난 해로 규정할 수도 있고, 현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해로 또는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사회에 깊은 상처와 악몽으로 존재했던 5·18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진보의 해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무게로 훗날 어떤 사회학자나 문화인 류학자는 1995년을 한국 동성애 운동의 원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다양한 동성애자 잡지들(위). 국내 동성애자 모임이 피나고 있는 각종 소식지들(오른쪽). 이를 단체는 지난 6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발족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것이 비록 지나치게 천차만별의 다양한 수준에서 임의적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동성애를 둘러싼 논의는 분명히 올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져진 일종의 화두였다.

올해를 동성애 운동의 원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새삼 우리사회에 동성애가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는 언제 어디서나 있었고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담론들이 이뤄지기 시작한 동시에 또한 동성애자 모임이 결성돼 동성애자 인권운동이라는 뚜렷한 지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동성애에 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직 뚜렷한 담론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완의 문제이자 그에 대한 담론이 형성과정 중에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동성애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주체가 바로 동성애자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직 뚜렷한 담론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완의 문제이자 그에 대한 담론이 형성과정 중에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동성애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주체가 바로 동성애자들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동성애자 단체 현재 다섯 군데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소수가 다수를 향해 말하는 점에서 대단히 불리하고 왜곡되며 쉬운 싸움이며 또 그 다수가 소수의 주장들에 대해 아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행중인 담론이다(따라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입법의 의미를 갖게 된다).

논의를 이렇게 명확하게 즐기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성문제를 다루었던 방식에서 조금

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문제를 다루면서 카메라 고발이나 로포 기사, 개인적인 고백수기류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진지함의 탈을 쓰지만 결국엔 성을 또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알박한 지적 선정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은 성문제를 다루는 것은 꼭 진지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동성애 운동이 제기하는 주장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첫된 심각함과 도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소수가 다수를 향해 말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리하고

왜곡되며 쉬운 싸움이며

또 그 다수가 소수의 주장들에 대해

직접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행중인 담론이다.

역적 우월감으로 서둘러 논의를 끝내 버릴 가능성 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는 무척 짧다. 하지 만 우리나라에서의 동성애 운동은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인권운동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처음에 동성애자 친목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대사회적 발언을 강화하

Special Report

"Satan is here. He weaves among us all. We must be vigilant and beware."



"And the men shall inherit the Earth!" McCartney indicates it's alright. Promise Keepers is the conservative People of different sexual orientations. **New Ballot Initiative** 이시아케이·레스비언들의 시위 모습.

스스로 안전한 색스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한편 국내 에이즈 예방단체들과 연대해 에이즈에 관한 공동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게이 인권운동가인 서동진씨는 "동성애 운동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성애 공포증과의 싸움에 다른 아니다"고 말한다.

한편 전세계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시초는 1969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스톤월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 6월 뉴욕은 시장선거의 열풍 속에 휩싸여 있었다. 당시 시장이었던 공화당의 존 린드레이이는 재선되기에 형편없이 낮았던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화생양을 필요로 했다.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강력한 가부장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우리에게 부과된 사회적 의미 벗겼다"

'스톤월 인'이라는 동성애자 주점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수색에 항의하는 게이들이 들과 화염병을 들고 맞서 은음으로 저항했다. 일주일간 스톤월 인이 자리잡은 크리스토퍼 거리는 해방구가 되었고 사태가 진정된 지 보름도 안돼 게이해 방전선이 탄생함으로써 스톤월 항쟁은 게이해방 운동의 신화가 되었다.

그리고 매년 6월 27일 전세계의 게이·레스비언들은 스톤월 봉기를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유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성애는 육고 그룹의 문제도 아니고 찬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개적인 운동을 시작한 것은 동성애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회적 인습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그 것은 이성애자의 오해와 편견을 고쳐주는 교육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성애자들에게 그런 신념을 갖게 만든 사회적 관계를 비판하는 일이다." ◎



갖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6일 발족된 한국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매년 6월 마지막주를 동성애자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국내에서의 활동 외에도 국제적인 동성애자 조직과 연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국제 레스비언 및 게이 협회(ILGA·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가 꼽히고 있는데, 이 단체는 전세계 도처에서 레스비언과 게이의 평등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 및 지역 단체들의 범세계적인 연합체다. ILGA는 지난 78년 발족해 현재 약 4백50여 단체와 개인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국내단체 중에는 얼마전 친구사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편 국내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서동진씨다. 지난 3월 컴투게더를 결성하기 위해 <연세춘추>에 실은 광고 때문에 당시 매스컴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그는 연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성정체에 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각종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동성애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내년 초까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문제를 쉽게 해결한 동성애 문제 가이드북을 포함해 동성애 운동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서씨는 "동성애 인권운동

이란 동성애자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애자다움에 부과돼 있는 사회적 의미를 변형시키는 싸움"이라고 말한다(그래서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체계의 문제와 결부된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를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과돼 있는 성도착자, 베타, 에이즈보균자, 비정상집단, 정신병자, 범죄집단, 패티너 등의 낙인을 떠나고 동성애와 동성애자다움에 새로운 의미를 채우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자도 인간이라거나, 동성애자는 원순잡이와 비슷한 것이라거나, 어떤 사람도 정당하다. 동성애자는 멋진다는 식의 공허하고 동어반복적인 태도를 통해 채워질 수 없을 것이다."

동성애는 육고 그룹의 문제 아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부정은 정작 동성애라는 고정불변의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편견없는 이해의 노력은 무엇보다 동성애를 하나의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고, 그를 거부하고 부정하도록 만드는 성제도 전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시대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성별

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러한 성제도를 꾸밀려하시키는 경제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동성애를 거부당해야 하는 사회적 사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제도에 대한 문제에서 동성애자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제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제도는 결혼과 가정을 기본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아파트분양과 주택자금대출도 모두 결혼과 부양기족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동성애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동성애 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유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성애는 육고 그룹의 문제도 아니고 찬반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개적인 운동을 시작한 것은 동성애를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회적 인습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애자의 오해와 편견을 고쳐주는 교육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성애자들에게 그런 신념을 갖게 만든 사회적 관계를 비판하는 일이다." ◎

동성애와 이성애는 동등하다

우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신중함과 열린 사고에 대한 부탁이다. 당신이 쉽게 결론내리고, 또 쉽게 내뱉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섞인 한 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절망 속에 빠트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제 궤도에 올라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 중 35%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인으로서의 절망' 때문이라는 사실은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물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것인가? 나는 우리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을 축구한다. 또한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강요되는 침묵과 자기혐오의 자갈을 스스로 벗어던지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대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미 '친구사이'(93년 결성) '끼리끼리'(94년 결성) '마음001' 컴투게더 '사람과 사람' 등 5개 단체가 활동중이며 지난 6월 26일 발족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1995년을 한국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선언문과 우리의 주장을 5가지를 발표했다.

한국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동성애자 여름인권학교와 최초의 동성애자자금의 날 비자행사, 일주주점, 베를 시장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5월 대지보와 소식지 발간작업을

주도하여 활동을 시작한 서울대의 마음001은 전국학생연대와 대중 토론회를 열고 11월에는 학내 영화동아리인 세네풀과 함께 이반영화제(이반은 한국동성애자 자금의 새로운 표현이다)를 개최하고, 자치도서관(팜보데이터베이스) 건설조직에 발기인으로 청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세대의 컴투게더는 성정치문화제와 제2대학 강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고려

대에서는 지난 9월 '사람과 사람'이 발족되었다.

아울 3개 대학 동성애자 단체는 공동으로 대학동성애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학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를 건설할 예정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동성애자들을 위한 조력기관으로서의 활동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강요된 낙인(stigma)을 거부하고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하여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동성애자 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계몽과 홍보작업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둘러싼 편견과 멸시의 억압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동성애나 이성애니 하는 어색한 구분을 해소하고자 하여 그를 통해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질서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자만의 것이 아니다. 여성해방운동이 남성해방운동과 동의어이듯 동성애자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있는 운동이다. 즉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우리가 지금껏 절대적 가치라 믿어온 기부장적 이성애주의에 대한 반문의 핵심으로서 작용한다.

동성애자는 유전적 돌연변이도, 불완전한 인성도, 성도착증 환자도, 도덕적 패륜아도 아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적정체성의 하나일 뿐이며 그 정체성의 소유자인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와 미친가지로 동등한 인격체인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컨대,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아직 침묵 속에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드리는 말로 새 짧은 글을 맞는다.

"동성애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그만 변화는 시작됩니다." ◎

| 이정우(서울대 마음001 대표) |

Special Report

“우리는 이해의 대상일 뿐”

게이 인권운동가 서동진씨 기고, ‘동성애의 관용시대’ 주장도 수정되



한국 국내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그 중심에 섰던 게이 인권운동가 서동진씨.

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휘저었던 많은 변화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그 틈새 속에서 무성히 덧피고 자란 변화의 정조들 속에서, 나는 성의 변화를 유통하는 양상으로 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5·18 관련자 기소나 노태우 비자금 문제 만큼이나 그게 중요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당연히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생각이 훨씬 강하게 세상을 해석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심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아의 진리가 되어버린 그 성의 위세만큼 우리에게 가장 살갑고 드거운 것이 어디 있는 나고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하물며 그것이 현저히 변화했을 전대 그만큼 중요한 변화가 더 어디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

그렇다고 내 말이 대뜸 우리의 육체와 영혼 어딘 가에 구체적인 상처를 낼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번쩍 뛸 만한 물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억지로 읽혀선 곤란하다. 아직도 성은 침실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낭만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달리 크게 이혼율이 급증한 것도 아니며, 사생애와 미혼모의 숫자가 눈을 번뜩 떨만큼 폭증한 것 역시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를 예워싼 성은 여전히 폐조이며 우리의 눈·코·입을 예워싸는 보는 각각의 환경은 줄곧 이 달콤하고 안온한 성과 사랑에 대해 주술을 외고 있다.

최근 ‘동성애 불’은 가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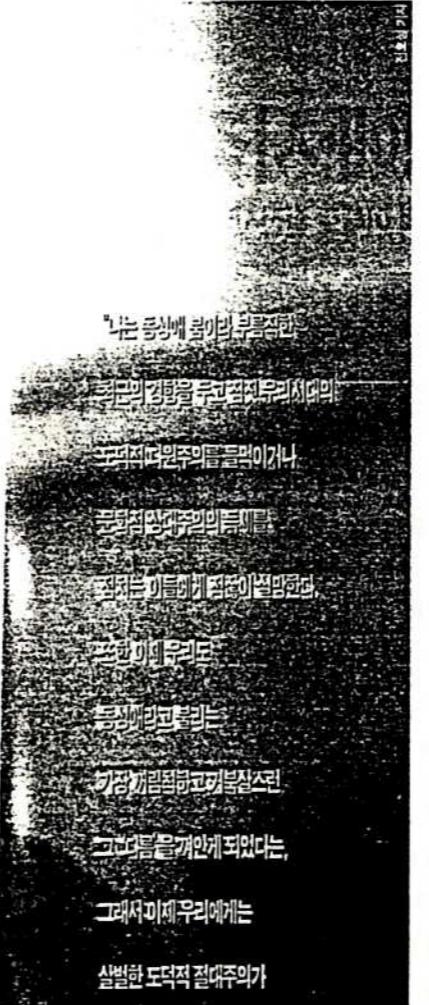
하지만 조금만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 사정이 꼭 그렇게 여의치만은 않다. 세상은 이제 개인과 자아의 질병과 타락을 무엇보다 성에서 찾고 있다. 그 탓에 많은 이들은 이 공포스러운 성으로부터 자신의 육체와 자아를 지키기 위해 순결을 언봉행하도 그 교차지점에 동성애가 있다.

나는 ‘동성애 불’이라 부름직한 최근의 심리적 경향을 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솔직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특히 이러한 사정을 두고 짐짓 우리 시대의 도덕적 다원주의를 들도록 부추김당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악몽 속에서 움직이고 숨쉰다. 그 악몽이란 친족살해의 악몽이며 기출청소년의 악몽이며 미혼모의 악몽이고 성화통의 악몽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악몽 속에서 아무런 분노와 연민을 느끼지 못한 채 자존과 도둑질 하듯 교수대에 매달았으며,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서슴없이 파시즘적인 검열조치인 통금과 학원감찰을 단행하며, 그 어떤 진지함도 지니지 않은 채 우조교사건을 회통한다.

그렇다.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것이라 불리는 세간의 질서와 사건은 죄다 성이며 사랑에 얹혀있다. 그렇다면 필시 우리는 성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발작적이며 편집광적이다. 그리고 불행하도 그 교차지점에 동성애가 있다.

나는 ‘동성애 불’이라 부름직한 최근의 심리적 경향을 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솔직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특히 이러한 사정을 두고 짐짓 우리 시대의 도덕적 다원주의를 들도록 부추김당한다.



먹이거나 문화적 상대주의의 득세를 겪치는 이들에게 적잖이 실망한다.
이제 우리도 동성애라고 불리는 가장 껴림칙하고 거북살스런 그 ‘나름’을 껴안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살벌한 도덕적 절대주의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설부른 예언에도 놀랄 수 없다. 특히나 동성애를 이 전부하고 허식적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미덥고 아름다운 사생활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 앞에선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물론 나는 이들이 가진 윤리적 미덕과 인간적 관대함을 십분 칭찬하며 그들이 보여준 호의와 지지를 누구보다 고맙게 여긴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동성애자운동에 기여를 하였는가의 문제는 따로 떼어두고 보아야 한다고 여긴다. 정작 관심을 돌워야 할 것은 그들도 모르는 새에 스스로 오인하며 빛어놓은 동성애에 대한 사고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반동성애적 주장들이 동성애에 대한 최근의 불이 가리키는 바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본다.
이를테면 나는 동성애를 아주 마뜩찮게 여기는 이들이 세상에 빛어놓은 말의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문제는 그들이 가리키는 저 동성애라는 대상이 아니라 그 가리킴을 행하는 손. 즉 무엇을 이해하고 설명하게 하는 일의 책임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동성애를 넘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성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를 비록 어둔 것인지는 하지만 비로소 밖으로 옮겨보는 일인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동성애에 대한 세간의 주장에서 도리어 동성애에 대한 태도보다는 ‘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사고의 밀그림에 더 관심을 둘우는 편이다.

동성애가 종종번식에 반하는 반태적 성행동이라는 우격다짐이나 동성애를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부정적 폐해라 간주하는 것. 그리고 대상을 가지지 않는 고삐풀린 욕망에 스스로 굽복해버린 자들의 애정 행각이라는 주장이나, 유한계급 자제들이나 벌이는 추잡한 취미로 본다는 억지나 모두 그 행간에는 무시무시한 의미의 타래들이 숨어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 모두를 해쳐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앞의 주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앞의 주장들이 성을 생식과 전통 그리고 저 초월적인 욕망과 계급 파악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작 그렇게 골치를 썩이는 대상은 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계와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성이라는 텅 빈 그 어떤 말의 씨임새이고 그 속에 우리가 부어놓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감히 나는 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염두로는 가장 큰 뼈대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런 점들을 두루두루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을 동성애에 대한 관용의 시대라 주장하는 이들의 설

부른 판단을 수정하고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정은 도리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단지 동성애와 관계된 그 어떤 외따로 떨어진 사고의 삶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는 최근의 경향이 내가 줄곧 이성애주의를 불러왔던 그 질서가 새차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이성애주의란 이성애라는 성 정체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고집하고 그와 결부된 삶의 질서를 이끌고 나이먹음이나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그리고 결혼과 가족과 연애의 제도 전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주의는 각양각색의 제도이자 동시에 독자적인 의미의 구조를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결혼과 가족과 이성애와 나이먹음과 남자다움이라는 것들이 직면한 위기와 틈새를 모면하고 메워줄 하나의 공동으로 동성애라는 덜미를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쳇말로 아직 동성애자들은 삼폐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며, 사생활의 민주주의자들 역시 아직 새로운 자유를 향해 축축을 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축제의 시기라기보다는 도리어 어둠과 폭력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서글프게도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걸보기에 싸움의 형세는 마치 동성애에 대한 찬반논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동성애는 찬반거리가 아니다.

증거침개 요약하자면 동성애는 그저 우리 시대의 문화적 사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조건짓는 많은 제도들과 질서들이야말로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둘러싼 입씨름에서 진정한 쟁점은 다른 곳에 있다. 이 싸움의 전진한 목표는 이성애주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을 마름질하고 포섭할 것인가이다. 이 싸움을 위해 동성애라는 그 어떤 미지의 것을 거론하고 지시하는 동안 온연중 우리는 ‘이것이 동성애다’라는 협약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판세를 보아선 이성애주의가 절대적으로 승리를 굳히고 있다. 그것은 동성애를 오직 하나의 욕망, 하나의 육체에 끽박아둠으로써 동성애자라는 하나의 사회집단의 가능성, 동성애라는 하나의 삶의 질서를 성공적으로 목줄 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그다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자들, 바로 동성애적 욕망이 아닌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자운동의 대열에 참여하길 진정 바라마지 않는다. ◎

부랑인의 인권문제

김수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 문제제기

올 7월부터 행려병자 등 유족이 없는 시체는 의대의 시체 해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실습용 시체부족으로 의과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 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한 시·군·구는 관내 의대에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의대는 3일안에 시체를 인수해 가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행려병자를 비롯, 연간 발생하는 2천여구의 무연고 시체의 처리가 해결된 셈이다 <서울신문 95.4.9>.

전국적으로 부랑인은 4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서울에서만도 5백여 명의 부랑인이 죽어간다고 한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부랑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들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삶을 마감하며,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과 함께 이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특특한 문제는 아니며 동시에 각 나라마다 차이를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주택전거 운동 "빈집은 우리 모두의 것"

유럽에서는 주택점거운동이라는 게 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현대적인 의미의 점거운동은 암스테르담이 발상지다. 시내에 점거중인 집은 무려 수백 채에 달한다고 한다. 점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크라크 스프레크 우어(Kraak Spreek Uur, KSU, 점거를 알선하는 시간) 사무소를 찾아간다. KSU에서 빈집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경찰대응방법에서부터 변호사 수비에 이르기까지 점거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미 1920년대 "생활권 행사의 결과인 주택점거는 위법이 아니다"는 판례가 나온데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는 점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위해 94년 주택법 일부를 개정했지만 '역사깊은' 주택점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빠리의 집없는 사њ들 찾지 '가로등'

프랑스 사회의 빈곤과 소외(추방)는 집없는 사람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90년대 파리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 된 그들의 모습은 차라리 인간존엄성의 마지막 안간힘으로, 무언의 시위로 비쳐지기도 한다고 홍세화씨는 말했다. 동냥하는 젊은이, 서투른 음악솜씨로 동냥하는 사람, 그냥 동냥하는 사람, 가로등을 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의 출현은 불황에서 1차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황은 실업사태를 낳았고 또 불황의 장기화는 장기 실업자를 낳고 그들중 약한 고리에 속했던 사람들-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배우지 못한 단순 육체노동자들의 일단이 거리로 쫓겨난 것이다. 이들은 불황의 피해자들이다. 불황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는 쫓아낸 그들의 불행과 절망을 불황의 탓으로 돌리고 눈길을 피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해고 위험에 스스로 양보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더욱더 무력해지고 있다. 사회보장이나 복지 개념 대신에 세계화 경쟁만 강조되고, 연대가치 대신 집단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미국 할렌가의 흠리스

94년 2월 연방정부의 흠리스대책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총 7백여만 명의 흠리스(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뜻함)들이 있다. 최근 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 빈곤과 인종차별, 흠리스를 지원하는 예산삭감을 들고 있다.

흡리스의 대다수는 흑인들이 차지하는데 이들의 소수민족사와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상품인 노예에서 이들에게 법적·제도적 차별이 제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문화적 제반 방해와 억압은 도처에 남아 있다. 이들은 흠리스 생활로 내모는데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흠리스의 대부분은 자본주의 생존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아예 경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빈곤층 이하로 떨어뜨려 버린다.

유럽의 흠리스

흡리스를 위한 국민조직 유럽연합에 의하면 유럽에는 적어도 유럽 전체인구의 1.5%

인 5백만 명이상의 흠티스가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70% 이상의 흠티스가 충분한 노동력을 가진 40세 이하이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진 여성흡리스와 부모가 버린 아동흡리스가 증가 추세이고 경제성장과 발전에 따라 빈곤과 흠티스가 역시 함께 증가해 왔다고 보고했다.

위의 예들은 과연 외국의 사례에 불과한 것인가. 청량리역, 서울역, 영등포역 등 역이나 공원주변에서 대낮에도 널부러져 있는 부랑인들을 떠올리게 된다. 시설에 수용된 부랑인들의 교육수준이 국졸이나 그 이하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과거 직업이 단순 노동이나 상업, 농업, 무직이 50%를 차지한다는 한 조사결과는 부랑인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 흠티스들과 인터뷰를 주어가며 취재했던 혜진스님은 “부랑인이 된다는 것은 뿌리를 잃는다는 것을 뜻하며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고 연결하는 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죽은 인간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랑은 바로 빈곤의 끝”이라는 말처럼 부랑인은 빈곤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한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Homeless(흡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Hopeless(희망이 없음)이 더 큰 문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나라라면 최소한 쉴 곳과 먹을 것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부랑인의 정의, 특성, 발생원인

부랑이란 용어는 거지, 걸인과 섞여 쓰이고, 영어로는 Homeless, Street people, Wanderer 등으로, 일본에서는 일용노동자, 무주택자라고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15일 발표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부랑인이란 일정한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건전한 생업수단이 없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며 사회에 혐오감을 주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내무부 훈령의 정의에 따르면 비행성, 우범성을 지닌 부랑인이고 이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1987년 보사부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무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능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알콜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 미만의 부랑아, 불구 폐질자 등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이들의 기질은 태만 또는 불량하고 주거부정 및 능력부족으로 인간관계나 사회조직 내에서 외면내지 방치되어 있다. 즉 부랑인을 사회질서의 파괴자로 취급, 복지의 대상으로 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부랑인을 사회보호대상자로 정의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써 존중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소대상

①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정신질환 또는 심신장애를 띠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부랑인으로서 보호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이 구걸하는 부랑인으로서 본인이 시설보호를 원하고 시장, 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③ 1,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이 있는 자 등이다.

부랑인의 특성

부랑인 수용시설 원암수양관의 보고서 "부랑인 사회복귀 계획서: 정착 생활단지조성" (1985)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의타성: 거지근성때문에 자급자족이 귀찮고 불로소득이 몸에 배어 있음
2. 욕구불만: 본능적인 요구에만 강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3. 낭비성: 장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소비와 탐진생활을 하며
4. 역마성: 방랑적 생활에 집착하여 정서의식이 부족하고
5. 자포자기: 신체적·정신적 결함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의욕이 없으며
6. 열등의식: 실패와 소외됨으로 인해 책임감도 적고 반항의식이 높다.

부랑인의 발생원인

개인의 자립, 자활능력의 결여, 나태성으로 인한 근로기피, 신체적 장애와 폐질 등에 의한 개인적 요인과 가정의 보호능력상실, 무능력, 결손 등의 사유로 적절한 가정보호가 미진함등의 가정적 요인과 사회적 적용능력의 결여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경석『가출·부랑아의 발생원인과 대책』1982).

외국의 무주택자들에 대한 것을 보면 원인은 ① 주택부족 ② 실업과 빈곤 ③ 탈시설화 ④ 가정불화와 학대 등이다. 미국의 경우 부랑의 원인을 경제문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등과 같은 구조적 원인과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개인적 위기로써 파악했다. 우리의 경우 부랑인에 대한 시각은 사회병리학적인 시각과 낙인론적인 시각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책임의 소재(개인 또는 국가)와 해결방법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순희,『부랑인을 위한 사회사업 서어비스의 개발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 사회병리학적 시각 - 사회문제는 도덕적 기대의 위반. 부랑인은 사회대중의 도덕적 기대에 대한 위반이며 그 원인을 사회화의 실패로 본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들이며 온건한 사회에서는 이들을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환자로 보지만 완강한 사회에서는 범죄자로 취급되어 보다 사회와 격리된 시설보호에 역점을 둔다.

· 낙인론적 시각 - 부랑인이라는 개인의 구걸행위, 주정행위등을 일탈이라고 규정하는 사회과정으로 하고, 이 규정을 특정인에게 적용함으로써 아웃사이더(국외자)로 낙인찍는다. 즉 단속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상길씨의『부랑인의 재활서비스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을 보면 인천 '은혜의 집'에 생활하는 부랑인 4백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서 부분적이지만 행려병자가 된 직업적인 동기를 읽을 수 있는데, 입소동기는 정신질환이 56.5%, 알콜중독이 19%로 나타났다. 입소경위를 보면 관찰관청의뢰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적인 단속의 성격을 띠고 있고, 타의에 의해 강제입소되었음을 말해준다.

3. 다른 나라에서는 부랑인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주택과 인권』(하야가와 가즈오 편저, 문영기 옮김, 범론사 1995)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92년 5월1일『주택인권사상』이란 제목으로 이미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일본에서는 시민운동단체 81년 '일본주택회의'가 생겨났는데 이 운동은 영국에서부

터 시작되어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 주택선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역시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권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1) 주택인권사상과 생활공간 - 하야가야 가즈오

"주거는 인권이다"

주거는 인간생활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가 빈약하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어울리는 주거에 사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고, 주거와 주택정책의 빈곤을 민족의 장래나 자손의 문제, 사회와 문화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정신활동의 자유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을 중히 여기는 사회가 존재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만들고, 풍요롭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물질적 기반으로서 주거가 그에 어울리는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거는 기본적 인권의 기초이다. 주거는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적다.

인간의 생활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지탱된다. 근로수입(수입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제도 포함)과 주택(생활공간으로서 생활기반)이다. 생활공간은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하나는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하나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2) 세계의 거주운동

▶ 영국의 주택인권사상 - 스즈키 히로시

81년 5월1일 국제주택도시문제연구련대회의에서 '주택인권선언' 채택되었다. 영국은 '복지국가'로써 주택정책의 축적과 함께 시민에 의한 주택운동을 중시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운동조직은 1985년 현재 96단체이다. 이 중에는 'shelter' (1977년 무주택자 주거법의 성립에 큰 역할)처럼 포괄적인 주택운동을 전개하고 독자의 연구활동이나 국회의원단을 조직해서 직접 로비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주택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확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거주에서 최저수준의 보장, 거주의 차별이나 침해의 금지를 전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 글래스고우(Glasgow)의 집세투쟁-마쓰이 세이지

여러가지 주택운동이 존재하는 영국의 예 중에서 대규모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이후 영국의 주택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택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것은 1915년 글래스고우의 집세투쟁이다. 공영주택의 요구운동 투쟁으로, 임대료투쟁운동이라 볼 수 있다.

▶ 이탈리아의 주택인권사상과 주택운동 - 무네다 요시후이

이탈리아의 주택투쟁은 계급투쟁으로써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가족이나 자신의 인생을 중시하는 이탈리아 노동자에게 주택투쟁은 생활권, 인권을 지키는 투쟁으로서 위치를 부여하고, 광범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탈리아는 집이나 가로, 턱아소, 축구장, 공영식당의 메뉴 등 보다 구체적인 투쟁목표에도 트집을 잡으면서 생활에 밀접한 물적 측면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국적의 사람이 이탈리아인의 풍요로운 생활에 감탄한다. 이탈리아의 '생활지상주의'와 '도시의 사상'에서 배워야 할 점은 많다. 왜 이탈리아인은 도시에서 쾌적하게 사는가.

그 이유는 이탈리아 도시특유의 풍유로운 생활, 즉 주택인권사상에 커다란 이유가 있다. 도시와 시민이 일체가 되고, 사회·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물적으로도 인권의 확립을 위해 투쟁의 장이 되어 왔던 역사를 돌아보면 물심양면으로부터 주택사상을 확립해 온 때문이다. 주택문제를 생각할 때 최대의 목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만족하는 풍부한 생활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다.

▶ 아시아의 슬럼과 거주실태 - 우치다 유우로와

1987년 '국제거주해'(International Year of Shelter for the Home-less, IYSH)였다. 직역하면 '무주택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해'이다. 국제연합인간거주센타 발행의 IYSH인 팜플렛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극히 심각한 주택문제를 안고 있고, 세계인구의 약 4/1은 불충분한 거주환경에 있고, 약 1억인의 사람들은 전쟁·재해·굶주림·빈곤 등의 이유로 정주해야 할 집조차 없이 노상이나 다리 밑에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집없는 사람들이야 말로 국제거주해의 메인 타겟였다.

UN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의 총인구는 현재 551억에서 서기 2천년에는 61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증가인구 중 약 10억은 도시부의 인구이고, 대부분 저소득국 또는 중소득국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속에서 거주문제는 점차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의 거주문제는 슬럼가, 불법점거, 무주택 등 여리가지 저질의 거주지가 존재하고 있다. 무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노상생활자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상생활자의 경우 보도위에 폐지나 비닐로 텐트처럼 건물을 짓고 생활하는 자가 많고, 인도의 봄베이시에는 수만 명이 존재하고 있다.

▶ 미국의 커뮤니티 주택-히라야마 요스케

현재 미국에서 '커뮤니티주택'은 활발하게 발전해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했다.

홈리스의 문제를 일본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측도 있다. 일본의 다음 논의는 사회병리적 현상에 치우친 우리 현실에서 간접시선을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Homeless' 문제란 무엇인가? 단순히 살 집을 잃어버린 것만의 문제인가?, 가족을 잃은 문제뿐인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문제일 뿐인가? 단순히 복지행정이 태만해서 일 뿐인가?

일본에서는 그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고, 현상적인 면만 앞질러, 그 본질을 호도하는 행정의 「대책」이 뒤따르는 통탄스런 상황이다.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직시하고 싶지 않은, 가능한 한 숨기고 싶은 문제일지도 모른다. 「번영」이라는 기만에 그냥 안주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의 기분을 무시하고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일의 중대함을 깨닫지 않으면 어느샌가 구미국가와 같은 「Homeless」 국가로, 이나라도 변해갈 것이다.

노상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며, 노동자이다. 그들이 맛보고 있는 고난을 '작업자득'이라고 비웃는다면, 같은 고난을 우리들도 떠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분리라는 경쟁사회의 규칙을 타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상을 이 세상에서 세워내기 위해……

1) 소위 「Homeless」 문제는 새로운 문제인가?

현재 「Homeless」라고 부르는 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일찌기 「부랑자」, 「가두생활자」로 불렸다. 단지, 명칭이 변했을 뿐이다. 「Homeless」라는 생활형태는 오늘날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다. 주거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집합장소와 역주변의 노동력 시장을 통과점으로 하면서 산업의 요청 가운데, 현장과 함께 이동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일부가 장기간 실업 등을 원인으로 하면서 노상생활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다. 「올림픽 준비를 위한 도시개조」라는 이름 아래, 산업도로, 고속도로, 간선도로 건설 등 산업기반 정비의 강행으로 인해 전국에서 모인 무권리 상태의 건설 일용노동자가, 그 이후 산업합리화와 경기변동의 물결 속에서 도태되어, 「폐잔병」의 낙인을 받은 자는 길거리에 방치되었다.

이와 같이 「Homeless」 문제는 전후 집합장소의 형성사와 동시에 일용노동자의 특종성으로 구조화된 문제이다. 주거가 없다는 현상만이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시대의 노동자가 산업의 발전과 고용정책 가운데, 층으로서 어떠한 운명을 강요받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본의 고용정책은 「노동력 유동화」 정책, 즉 고용보장이 빠진 임금노동력의 창출과

배치정책에 있다. 일용노동자의 말로, 일용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야숙생활을 영원히 강요받아 「가두생활자」가 되며, 길거리나 병원에서의 죽음을 강제받는다.

「Homeless」의 형성사와 더불어 어느 사회적 계층이 이 문제에 가장 적결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불황의 자식이라는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도시문제」라는 페지적인 문제도 아닌, 고도경제성장 이후 집합장소와 임시숙소에서 집적시켜간 건설 일용노동자 고유의 운명, 그 결과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소위 「Homeless」문제에 오늘날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가(1)

신쥬쿠에서 노상생활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67%의 사람들이 퇴직, 실직, 가출, 사업의 실패 등 직업-일의 측면을 들고 있다. 건설 일용시장의 「거품경제붕괴」 영향이 행정자료의 수치로 나타난 것은 1991년도부터로, 노상생활자의 증대는 「거품경제붕괴」에 의한 건설 일용시장의 냉각과 직결되어 있다.

광역화, 정착화, 고령 노상생활 노동자의 문제에서도 이 사실이 제법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확실히 자본의 의도에 의해 배제된 고령의 일용노동자는 경기회복이 있다고 해도, 재취로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그들의 대다수가 집합소 등을 전전하고, 역 주변을 전전하며, 「가두생활자」화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Homeless」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현상은, 단순한 불황의 산물이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불황을 지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독점자본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무공급체계의 재편문제를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소위 「Homeless」문제에 오늘날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가?(2)

「New Homeless」와 이들의 존재는 오늘날 고용 실업문제를 현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실, 그리고 고용불안과 노상생활이라는 생활양식이 일용노동자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주었다. 1980년대의 ME 「합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악, 그리고 1990년대 불황에 대응한 독점자본의 국제적인 리스트러 전략 아래 일어나고 있는 국내 고용의 「공동화」문제, 「규제완화」, 「사회적 규제의 탄력화」 구호로 진전된 노동자의 권리박탈,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의한 불안정 고용의 확대로 향한 움직임 등, 이미 「구조적 실업」화 사회의 조건은 점점 진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장이 빠진 새로운 「노동자 유동화」정책은 도시빈곤자, 실업자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배출된 도시빈곤자, 실업자의 일부를 노상생활로 전락시켜 가는 결과를 쉽게 부른다.

지금 현실에서, 다른 산업에서 전락해 온 사람들이 이후 어떠한 산업에 흡수·재편

되어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화, 고령화 한 일용 노상노동자와 동일한 운명을 걸을 것인지, 새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4) 소위 「Homeless」문제에 대한 행정측의 대응은?

「Homeless」문제의 해명과 대책은 의식적으로 사보타지하고, 노상생활자를 「부랑자」로 일면화하면서, 자기 구 내의 문제가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방작전으로 사실의 본질을 은폐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상폐지철거작업」등 골판지 철거작업을 개시하고, 도청주변의 「환경정비」를 본격화 한다.

「Homeless」문제는 일대 은폐를 피해야 하는 정도의 큰문제라고 조금씩 인식하는 자세가, 고작 졸렬한 작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작전의 돌입은 추방 이외 어떤 대책도 없이 죽게 내버려두는 강제에서 「격리·수용」을 수반한 「노상생활자 사냥」으로, 더욱 공공연하게 의식적으로 「죽게 내버려두기」로 정책전환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은폐라고 해도, 집합장소에서는 노동자를 둘러쓸 수는 있지만, 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점에 있다. 노상생활자의 증대속도는 행정에서 측량할 수 없고, 「격리수용」의 규모를 훨씬 넘어버릴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5) 소위 「Homeless」운동은 무엇인가

신쥬쿠에서는 작년 2월17일 이후, 동경도, 신쥬쿠구에 대한 노상생활자의 반격이 조직되고 있다. 지원운동체는 노상생활자를 축으로 하는 운동을 추구하고, 「신쥬쿠 싸우는 동지들 모임」이라는 노상생활자의 단결형태를 갖기에 이르렀고, 이번 겨울에는 제 1회 신쥬쿠 월동투쟁을 조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상생활자의 운동이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지, 또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아직 설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근거에서 본다면 집합장소의 운동, 일용노동자의 운동이 커다란 과제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의 범위를 넘고 있는 문제, 오늘날의 과제를 대다수 포함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단순화를 거부하고, 노상생활자의 현상에 접근하고, 운동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써, 명확히 해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4. 부랑인 실태